

자료집

토론회

## 12.3 내란 특검 앞에 놓인 과제

: 진실, 책임, 정의

일시 | 2025. 7. 8.(화) 14:00

장소 | 민변 대회의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지하1층)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토론회

# 12.3 내란 특검 앞에 놓인 과제: 진실, 책임, 정의

일시 2025. 7. 8.(화) 14:00

장소 민변 대회의실

■ 사회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발제 1 박용대 (민변 12.3 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 TF 단장)

기존 수사 및 공소유지와 재판의 문제점

☑ 발제 2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12.3 내란 특검에서 규명되어야 할 과제

☑ 발제 3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18학회 회장)

내란죄에 관한 법철학적 고찰 -처벌과 정상화 사이에서-

☑ 토론 1 박용홍 (민변 12.3 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TF 변호사)

☑ 토론 2 문병호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 목 차

발제 1. 12·3 내란 혐의 사건의 수사, 공소유지 및 재판의 문제점

\_ 박용대(민변 12.3 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TF 단장)

발제 2. 12.3 내란 특검에서 규명되어야 할 과제

\_ 이재근(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발제 3. 내란죄에 관한 법철학적 고찰 -처벌, 정화, 정상화-

\_ 이재승(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18학회 회장)

토론 1. 박용흠(민변 12.3 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TF 변호사)

토론 2. 문병효(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 12·3 내란 혐의 사건의 수사, 공소유지 및 재판의 문제점

박용대(민변 12.3 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TF 단장)

### 들어가며

2025. 6. 10. 국무회의는 5일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내란특검법’)안을 의결했다. 내란특검법은 곧바로 공포되고 시행에 들어갔다. 국회에서 두 차례 통과를 했지만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공포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법률이다. 세 번째 발의 만에 거부권 행사 없이 시행에 이르게 되었다. 12·3 내란 사건이 발생한 지 184일 만이다.

내란특검법이 시행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6. 13. 조은석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내란특검’으로 지명했다.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나서야 특별검사에 의해서 본격적인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많은 시민들이 내란특검을 손꼽아 기다려왔던 것은 그 동안 검찰, 경찰, 공수처, 군검찰이 수행했던 내란 사건에 대한 수사가 대단히 부족했고, 한계가 있다는 답답함 때문이었을 것이다.

### 2. 12·3 내란 사건의 특징과 수사 관련 시사점

12·3 내란 사건의 성격은 ‘친위 쿠데타’로 상징된다. 친위쿠데타는 특정한 헌정체제에서 권력을 얻은 정치지도자가 자신의 권력을 헌법에서 허용한 것 이상으로 강화하고 연장하려는 목적으로 그 헌정체제를 공격하는 군사정변이다<sup>1</sup>.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것이다. 쿠데타를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일반적인 쿠데타 시도의 성공률은 50% 정도이지만, 친위쿠데타의 성공률은 80% 이상이라고 한다<sup>2</sup>.

<sup>1</sup> 신진욱 외, 『광장 이후』 33쪽, 문학동네, 2025

<sup>2</sup> 신진욱 외, 위의 책 33쪽에서 재인용

친위쿠데타의 주요 특성 중 하나는 쿠데타를 시도하는 주체가 권력자이기 때문에 권력자라는 지위에서 자신의 명령을 따르는 군, 경찰, 수사기관, 정보기관 등 국가기관의 모든 권력 자원을 큰 저항 없이 동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대통령에 의한 친위쿠데타는 대통령의 측근들을 비롯해서 여당, 군, 검찰, 경찰, 법원, 정보기관, 정부 각 부처에 소속된 수많은 파워엘리트들이 관여하게 되는 특성을 지닌다. 이로 인해 (그 쿠데타 세력을 신속하게 권력기관으로부터 제외시키지 않으면) 1차 쿠데타가 실패한 후에도 쿠데타 주도세력은 상당한 규모로 권력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가 된다. 그래서 그 후에도 군사적·사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추가 내란을 시도하거나, 직전에 발생했던 내란의 범행을 숨기거나 은닉하기에 용이하다<sup>3</sup>.

12·3 내란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 추궁, 재발방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도 친위쿠데타가 가진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내란 비호세력이 여전히 정부 권력기관 곳곳에 남아 있고, 그들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들 상당수가 12·3 친위쿠데타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신의 책임 추궁을 피하거나 모면하기 위해서 그 진상을 숨기거나 은닉하려는 행동과 시도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와 같은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12·3 내란이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은 그 범행에 상응한 단죄나 책임 추궁은커녕 오히려 석방되었다. 많은 국민을 공포와 불안에 내몰았던 내란범죄의 주범이 거리를 활보하고, 영화관에 나타나 영화를 관람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헬기가 국회로 날아왔으며, 수천 명의 무장군인과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기 위해 동원되었던 내란 사건이라는 엄청난 범행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구속기소된 자가 단 11명<sup>4</sup>, 불구속기소된 자가 9<sup>5</sup>명에 불과하다는 사실, 6개월이 지나도록 형사재판을 통해 단죄된 사람조차 없다는 사실은 12·3 내란 사건이 가지는 특성과 그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비정상적이고 불안한 현실, 아직 내란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다는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

<sup>3</sup> 신진욱 외, 위의 책 34쪽

<sup>4</sup> (윤석열, 김용현, 조지호, 김봉식, 박안수,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문상호, 노상원, 김용군

<sup>5</sup> 이상현 1공수특전여단장,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김대우 방첩사령부 수사단장,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고동희 정보사 계획처장, 김봉규 정보사 중앙심문단장, 정성욱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그런 점에서도 내란특검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소임은 적지 않다. 본 토론회는 내란 특검의 과제와 소명, 그리고 수사 및 진상규명과 관련된 사항들에 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논의에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내란특검이 출범하기 전 6개월 사이에 진행되었던 기존의 수사, 공소제기와 유지, 형사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살펴보는 것은 유의미한 작업일 것이다. 그것은 지난 시기의 문제점을 돌아보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함과 동시에 내란특검이 앞으로 어떤 점을 더욱 고려해야 하는지, 수사 및 공소제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떤 점에 주안을 두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토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3. 12·3 내란 사태 후 있었던 수사 및 재판 진행 경과

12·3 내란 사태 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일찍이 상상해 보지 못했던 것들로, 우리의 소중한 일상과 편안한 밤잠을 뺏을 정도로 긴박하고 불안한 사건들의 연속이었다. 12·3 내란 사건이 발생한 때부터 내란 특검이 본격적으로 출범하기 전의 기간으로 6개월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발생했었던 주요 사건들 중에서 수사 및 재판 진행과 관련한 사건들을 일자별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2024년

12. 3. 오후 10시 28분 윤석열, 긴급담화의 형식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

12. 4. 야 6당, 윤석열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 발의

12. 6.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구성, 군검찰 합류

12. 7. 국회 본회의, 윤석열에 대한 1차 탄핵안 투표 불성립 폐기

12. 8. 새벽 1시 30분경, 김용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고 출석함  
검찰, 오전 7시 52분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김용현을 긴급체포함.

경찰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설치, 김용현 공관 및 집무실 압수수색

공수처, 검찰·경찰에게 ‘비상계엄’ 사건 관련하여 이첩 요구 → 사실상 거부함.

12. 9. 검찰, 김용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해서 합동 압수수색
12. 10. 법원, 김용현에 대하여 구속영장 발부, 김용현 구속됨.
12. 11. 공수처·경찰 국가수사본부·국방부조사본부, 공조수사본부를 출범시킴.  
검찰 특수본, 육군 특수전사령부 압수수색  
경찰, 조지호·김봉식에 대하여 긴급체포, 경찰청·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함.
12. 12. 야6당, 윤석열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제출  
검찰, 수도방위사령부를 압수수색  
공조본, 국방부조사본부를 압수수색  
경찰, 조지호·김봉식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
12. 13. 검찰 특수본, 여인형에 대하여 구속영장 청구, 이진우를 체포함.  
법원, 조지호·김봉식에 대하여 구속영장 발부
12. 14. 중앙지역군사법원, 여인형에 대하여 구속영장 발부  
검찰, 곽종근 특전사령관에 대하여 구속영장 청구  
국회 본회의,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찬성 204표  
공수처, 검찰·경찰에게 ‘비상계엄’ 사건에 대해 이첩을 재요구함.
12. 15. 검찰, 박안수·이진우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경찰, 노상원·문상호 긴급체포, 노상원 운영 점집 등 압수수색, 노상원 수첩 확보
12. 16. 경찰, 윤석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  
서울중앙지검,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해 재판권 문제를 이유로 경찰의 긴급체포  
불승인  
중앙지역군사법원, 이진우·곽종근에 대하여 구속영장 발부
12. 17. 중앙지역군사법원,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  
경찰, 노상원에 대하여 구속영장 신청
12. 18. 공수처, 문상호 체포  
검찰, 윤석열·이상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

경찰, 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긴급체포  
법원, 노상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12. 19. 검찰, 정보사령부·국수본·영등포서·국방부 조사본부 압수수색  
경찰, 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구속영장 신청

12. 20. 공수처, 문상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중앙지역군사법원 구속영장 발부  
경찰, 내란 혐의 조지호·김봉식 구속 송치

12. 21. 법원, 김용군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12. 24. 경찰, 정보사 김봉규·정성욱·고동희 대령 사건 공수처로 이첩

12. 26. 공수처, 문상호 사건을 군검찰로 이첩

12. 27. 검찰, 김용현을 내란 주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경찰, 김용군 구속 송치

12. 30. 공조본, 윤석열 체포·수색영장 청구  
법원, 김용현 사건 형사 25부(재판장 지귀연)에 배당

12. 31. 서울서부지방법원, 공조본이 청구한 윤석열 체포·수색영장 발부  
검찰,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구속기소  
국방부 조사본부, 육군 제2기갑여단 압수수색  
공조본, 방첩사령부 압수수색

2025년

1. 3. 군검찰,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구속 기소  
공수처,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 → 5시간 반 경호처의 저항으로 체포영장  
집행 불발됨.

1. 5. 법원, 윤석열이 제기한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함.

1. 6. 군검찰,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기소  
공수처,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재청구, 영장 기한 연장을 위해.
1. 7. 서울서부지법,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재발부
1. 8. 검찰, 조지호·김봉식을 구속기소
1. 10. 검찰 특수본, 노상원 구속기소  
박종준 경호처장 사의, 최상목 권한대행이 사표를 수리  
검찰, 박종준 경호처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
1. 15. 공수처,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 윤석열을 체포함. 12·3. 비상계엄 선포  
후 43일만임. 현직 대통령 체포는 처음.  
검찰, 김용군 전 대령 구속기소
1. 16. 법원, 김용현 사건에 대해서 첫 공판준비기일  
법원, 윤석열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사청구를 기각함.
1. 17.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1. 18. 서울서부지법, 윤석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신문) 진행(4시간  
50분)
1. 19. 서울서부지법,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검찰, 경찰이 신청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반려
1. 20. 공수처, 윤석열의 공수처 조사 거부에 대응해 구치소를 방문하여 강제 구인하려  
했으나 불발됨.
1. 22. 서부지법 난동 6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56명 구속됨.  
공수처, 대통령실·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했으나 불발됨.
1. 23. 공수처, 윤석열에 대한 기소요구 의견으로 검찰에 송부함.
1. 24. 서울중앙지법, 검찰이 청구한 윤석열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 불허함.

1. 25. 검찰, 윤석열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함.  
서울중앙지법, 검찰이 신청한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을 불허함.
1. 26. 검찰, 윤석열에 대해서 구속기소
2. 20..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사건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 구속취소 심문기일 진행함.
2. 25. 헌법재판소,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 진행, 변론 종결함.
3. 7. 서울중앙지법,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인용결정함.
3. 8. 검찰, 서울구치소에 윤석열 석방 지휘서 송부 (체포 52일, 구소기소 41일 만에 윤석열 석방됨)
4. 4.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인용, 대통령직 파면 결정
6. 3. 제22대 대통령 선거일, 이재명 대통령 당선
6. 5. 국회 본회의, 내란 특검법 통과(찬성 194표, 세 번째 특검법임)
6. 10. 국무회의, 내란특검법 의결. 정부, 내란특검법 공포
6. 13. 이재명 대통령, 내란 특검에 조은석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명
6. 18. 조은석 특검, 김용현에 대하여 추가 기소, 구속영장을 청구
6. 24. 조은석 특검, 윤석열에 대하여 체포영장 청구
6. 25. 법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기각  
중앙지역군사법원, 박안수, 이진우에 대하여 조건부 보석 결정, 석방됨
6. 26. 법원, 김용현에 대하여 추가 구속영장 발부(구속만료 3시간 전)
6. 30. 중앙지역군사법원, 여인형, 문상호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7. 5. 법원, 노상원에 대하여 추가 구속영장 발부

## 4. 수사 관련 문제점

### 가. 진실에 다가서지 못한 수사

앞서 친위쿠데타가 가지는 특성에서 보았듯이 12·3 내란 사건은 일반적인 범죄 사건과 그 성격이 크게 다르다.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이 일으킨 친위쿠데타이기 때문에 군, 검찰, 경찰, 정보기관, 대통령실, 국무위원, 여당 등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관계를 맺는 많은 권력기관과 자원이 관여될 수밖에 없다. 우리 모두가 목격했듯이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전격적으로 선포하고, 방첩사, 특전사, 수방사 등 무장한 군병력을 국회와 선관위에 출동시켰다.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 후속 조치에 대한 문건을 전달하고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 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대통령 안가로 미리 불러 비상계엄 선포에 대비토록 하였다.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에게 전화해서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방첩사를 도우라고 지시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 하더라도 광범위한 국가기관과 종사자들이 관여되었음을 잘 알 수 있다.

12·3 내란의 범행이 일어난 지 무려 6개월이 지났다. 그런데 어떤가. 내란 사건의 진상이 모두 제대로 밝혀졌는가. 그렇게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12·3 내란 사건이 발생한 후 지금까지 구속기소된 사람은 11명, 불구속 기소된 사람은 9명뿐이다. 그 외 다른 혐의자들의 관여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한다거나 수사를 해서 밝혀냈다는 기사나 보도를 보지 못했다. 6개월의 기간 동안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12·3 내란 사건이 일어난 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

- 1) 윤석열은 내란을 왜 일으켰는가 (내란의 동기)
- 2) 내란 주도세력은 언제부터 내란을 모의하고 준비했는가.
- 3) 내란을 모의하고 주도한 사람들은 누구이고, 그들을 도왔던 협조자는 누구이며 어떤 역할을 했는가.
- 4)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키고, 전쟁이나 군사 분쟁을 일으키려 했던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 행위들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무슨 목적으로 발생했으면, 내란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5) 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구속기소에 드러났듯이 경찰의 관여는 확인되었다. 그러면 검찰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검찰을 신뢰했던 윤석열은 검찰을 동원하려 하지 않았을까. 검찰은 언제부터 내란 범행 사실을 알았고, 어느 정도 관여 되었던 것일까.

6)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검찰청 고위급 검사 2명이 선관위로 출동하려 했다는 제보도 공개되었다. 검찰에서 누가 연락을 받았고, 그와 같이 행동한 이유와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7) 내란 중요임무종사자인 김용현은 2024. 12. 8. 새벽 1시 30분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고 출석해서 긴급체포되었다. 그는 왜 검찰에 자진출석의사를 밝히고 체포된 것일까.

8) 국가의 중추적 정보기관인 국정원은 언제부터 내란 범행을 알았고, 어느 정도 관여되었던 것일까. 구체적으로 누가 관여했고, 무슨 역할을 담당했는가.

9) 대통령의 업무를 가장 가까이서 보좌했던 대통령 비서실, 안보실 등의 핵심 측근들은 누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고, 어느 범위에서 관여되어 있었던 것일까.

10)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비상계엄 준비를 정말 몰랐을까. 그들은 언제부터 알았고, 어느 정도까지 관여된 것일까.

11) 12·3 내란 사태 당시 출동한 병력은 방첩사령부,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정보사 등이었는데, 그 외 다른 군 기관들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언제, 어느 정도로 관여한 것일까.

12) 노상원은 현직 군인도 아닌데, 그가 왜 내란 범행의 중요임무종사자가 된 것일까, 그가 한 역할은 무엇일까, 어느 정도의 역할을 담당했기에 비화폰까지 위법하게 지급받은 것일까.

13) 노상원의 수첩에는 선관위 직원들의 체포, 구금 외에도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해 수거 후 살해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내란목적살인의 예비 또는 음모도 한 것이 아닐까.

14) 노상원의 수첩은 혼자 작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면 누가 그 계획을 함께 수립했던 것일까.

15) 포고령은 누가 언제 준비하고, 작성한 것일까.

16) 내란의 범행이 제대로 되려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범행 후 정치세력의 지지도 중요하므로 국민의힘 집행부나 주요 정치인들에 대해서 협조를 구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들은 언제부터 내란 범행을 알았고, 누가 어떻게 관여한 것일까.

17) 12·3 내란 사건이 발생한 직후 윤석열의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4인은 삼청동 안가에 모였다. 그들은 비상계엄 직후 왜 그 곳에 모였고, 무엇을 논의했던 것일까. 그들 모두가 법률가라는 점에서 당연히 법률적 사항들을 논의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그러면 그들은 내란 사건이 실패 후 윤석열과 자신들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범행 축소 및 은폐를 논의했던 것은 아닐까.

18)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로부터 문건을 받았는데, 그의 부인(否認)과 달리 그는 그 문건을 받은 후 어떤 조치를 했던 것일까. 그 문건에 적힌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했던 것은 아닐까.

19)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안 가결 후 그들은 2차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고 알려진다. 누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2차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던 것일까.

우리는 이처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많은 의혹과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진상들이 수사 등을 통해 밝혀지기를 원했다. 그와 같은 사실들을 명백하게 밝혀야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나아가 더 이상 그와 같은 쿠데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재발방지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지켜본 것처럼 지난 6개월 간 그것에 관해서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증거를 제 때 수집하지 못했을 위험이 있다. 반대로 범행 관여자들에게 증거를 은닉하거나 인멸할 시간을 제공했고, 서로 말을 맞출 기회를 줬을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시사점을 확인하게 된다.

1) 하나는,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구 개혁의 필요성이다. 친위쿠데타라는 성격으로 인해 수사기관도 권력자의 쿠데타를 적극적으로 진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시민들에 의해서 친위쿠데타가 실패한 경우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제대로 된 수사기관이라면 즉각 수사를 개시하여 주요 범피자들을 체포, 구속함으로써 더 이상 2차, 3차 쿠데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압했어야 한다. 그러나 12·3 내란 사태 후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들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사 활동을 보이지 못했다.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수사권 다툼의 불쌍사나운 모습만 두드러지게 보여줬을 뿐이다. 수사기관이라면 당연히 했어야 하는 소명, 즉 범피의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을 소홀히 했다. 지난 6개월은 우리 공동체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제대로 된 수사기관이 왜 필요한지 더욱 절실히 느낀 시간이었다. 그런 점에서 검찰 개혁을 중심으로 한 수사기관 개혁이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과제를 새삼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2) 두 번째는 내란특검이 해야 할 업무와 과제가 상당히 많고 중요하다는 점이다. 6개월이 지나는 동안 드러난 범죄 혐의에 비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서 본 의문들의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드론 침투 사건 등 12·3 쿠데타와 관련된 모든 진상들을 수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해야 할 책임이 내란특검의 어깨에 놓이게 되었다. 다행히 조은석 특검은 내란특검 수사에 임하면서 ‘사초를 쓰는 자세’로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그 초심 그대로 누락되거나 부족함이 없이 모든 진실이 역사에 남을 수 있도록 12·3 쿠데타의 진상을 철저히 파헤쳐 주기를 기대해 본다.

3) 세 번째는 12·3 쿠데타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자신이 관여된 것은 없는지에 관한 점도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12·3 비상계엄 당시 대검찰청 고위급 검사 2명이 선관위로 출동하려 했다는 제보가 공개됐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윤석열의 석방 결정에 대해서 대단히 이례적인 이유와 방법으로 즉시항고를 포기함으로써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시켰다. 검찰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경찰의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무려 세 차례나 반려했다. 내란 사건에서 보여준 이와 같은 검찰의 태도는 종전 자신들이 해왔던 수사 관행과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이다. 그 같은 검찰의 석연치 않은 태도와 행동은 12·3 내란 사건을 제대로 진실 규명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검찰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혹을 낳았다. 여기에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자가 검찰 출신이라는 점, 대통령 재직 시 검사들을 정부 요직 곳곳에 인사함으로써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검찰을 크게 신뢰했다는 사실을 더하여 볼 때 12·3 내란 사태 때

검찰이 관여했는지 모른다는 의혹은 합리적 의심이 되었다. 제대로 된 진실규명과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를 위해서 그와 같은 의혹이 사실인지, 12·3 쿠데타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의 관여 사실에 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 **나.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실체적 진실들**

내란특검이 출범하면서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실체적 진실들에 관한 보도들은 검찰, 공수처, 경찰이라는 종전 수사기관들이 지난 6개월 동안 12·3 내란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 중 일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북 무인기(드론) 침투는 윤석열 지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무인기 침투가 윤석열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김용대 드론사령관이 직접 말했다는 취지의 녹취록을 내란특검이 확보했다고 한다. 그 녹취록에 따르면 “V(윤석열) 지시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한다” “빠라(전단) 살포도 해야 하고, (북한의) 불안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드론을) 노출할 필요가 있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특히 북한이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 위협적인 반응을 내놓은 것에 대하여 “VIP와 장관이 박수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그랬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는 진술도 함께 담겨 있다고 한다.

### **2) 비상계엄 선포문의 허위 작성과 관련된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12·3 비상계엄 선포 전 한덕수 등이 부서한 비상계엄 선포문은 작성된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이 실패하자, 한덕수 등과 공모하여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이 계엄선포 전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탄핵 또는 수사 대응을 할 때 행사할 목적으로 마치 사전에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이 부서한 비상계엄 선포문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공문서를 사후에 작성했다. 이러한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죄사실은 내란특검이 2025. 7. 6.에 청구한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에 적시되어 있다고 한다.

### 3) 총기를 보여줘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지시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에 의해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을 정당한 권한은 없다. 또 적법한 영장의 집행이었기 때문에 무기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도 없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자신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수사관들의 영장 집행을 저지할 목적으로 경호처 공무원들에게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지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고 지시했다. 이에 김성훈과 이광우는 윤석열의 지시를 받고 경호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총기를 소지하고 경호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공수처 등이 하려는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인 힘을 동원하여 불법적으로 저지했다.

위와 같은 범죄 혐의들은 최근어야 드러나고 있다. 검찰 등이 제대로 수사할 의지만 있었다면 그 전에 밝혀내지 못할 이유가 없었던 사실들이다. 하지만 검찰 등은 이를 밝혀내지 못했다. 어쩌면 밝힐 의사와 의지가 없었을 지도 모른다. 이처럼 종전에 이루어진 수사는 윤석열이 한 범죄 사실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 이러한 수사 현실은 종전 수사가 보여준 문제임과 동시에 수사기관의 개혁이 더 이상 늦추기 어려운 시대적 과제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기도 하다.

#### 다. 내란 우두머리의 석방

지귀연 재판부는 2015. 1. 15.에 체포되고, 1. 19.에 구속되었던 윤석열에 대해서 2025. 3. 7. 구속취소 결정을 했다. 대검찰청은 2025. 3. 8. 윤석열을 전격적으로 석방한다. 상급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행정처장의 설명과 검찰 내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지귀연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도 대단히 이례적인 것이었고, 대검찰청의 즉시항고 및 보통항고의 포기도 대단히 이례적인 경우였다. 그로 인해 윤석열은 12·3 내란 범행의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되지 않은 채 거리를 활보하게 되었다.

윤석열이 석방됨으로써 그가 자신이 살고 있는 주거지 근처를 돌아다니거나, 성남시 판교의 보리밥집에서 식사를 하거나, 서울 동대문 소재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장면이 목격되었다. 그는 45년 만에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수천 명의 무장 군인을 국회와 선관위에 출동시켰으며, 국회에 헬기를 침투시킨 내란 우두머리 범죄혐의자이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대통령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가 있기까지 무려 6개월 동안 시민들의 소중한 평온한 일상을 빼앗았고 우리 경제와 사회를 크게 후퇴시킨 내란의 주범이다. 그런 그가 자신의 범행에 상응한 처벌과 단죄를 받지 않은 채 거리를 활보한다는 것은 대단히 정의에 반하는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12·3 내란 사건으로 인해 김용현 등 10명의 사람들이 중요임무중사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작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자가 구속되지 않고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은 많은 시민들에게 우리의 사법체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시민들의 편에 서서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만들었다.

특히 지귀연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과 심우정 대검찰청의 즉시항고 포기는 법령을 위반한 결정이고, 종전의 실무관행을 크게 벗어났다는 점에서 시민들이 받은 충격은 매우 컸다. 이미 많은 비판이 있었던 사안이지만, 구속취소결정과 즉시항고 포기가 위법하고 이례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법적 근거 부족

- ✓ 기존에는 구속기간 "일" 단위로 계산했는데 갑자기 "시간" 단위 적용 / 체포적부심사 서류 이관 기간 산입 원칙 변경
- ✓ '그러나'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의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 240시간으로 규정돼있지 않음.
- ✓ 대법원은 현재까지 구속적부심이 청구된 모든 사건에 관해 수사기록이 접수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를 구속기간에서 제외한 종래의 실무를 수긍
- ✓ 지귀연 재판장이 집필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日)로 한다고 명시된 것으로 확인
- ✓ 지금까지 일 단위로 구속되어온 피고인들은?

### 라.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막은 윤석열과 경호처

법원은 윤석열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2025. 1. 3.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그런데 윤석열과 경호처는 법원의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하려는 공수처와 경찰을 무장한 경호인력을 동원하여 물리적으로 막아섰다. 심지어 윤석열은 경호처 소속 경호관들에게 총기 등 무기를 소지하고 이를 보여주도록 지시함으로써 자신을 체포하러 온 수사관들을 막아내려고 하였다. 현직 대통령과 경호처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집행을 불법적으로 막아선 것이다. 자칫 우발적 총동으로 총기가 사용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순간들이었다.

사법질서는 국가공동체를 지탱하는 근본적 질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을 무장한 경호처 인력을 동원하여 불법적으로 막아선 장면은 많은 국민에게 충격이었다. 우리의 사법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심하게 만들었고, 많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장면이었다.

## 마. 압수·수색 영장 집행의 방해로 인한 형사소송법 규정

12·3 내란 사건은 대통령에 의해 이루어진 범행이기 때문에 상당수의 증거도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산재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이유로 경찰은 비화폰 서버와 대통령 집무실 CCTV 등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섰다. 그러나 경찰의 6차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모두 경호처 등에 막혀 무산되었다. 경호처가 내세운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이다.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조문이다. 경호처는 그 법률 규정을 내세워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막았다.

12·3 내란 사태뿐만 아니라 대통령, 대통령실, 경호처, 군 고위층에 대한 수사를 할 때 증거수집에 필요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은 번번이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에 의해 막혀왔다.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제2항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호처나 대통령실 등은 거의 대부분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승낙을 거부했다. 위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승낙 거부는 위법하고 부당한 것이어서 수사기관은 물리력을 동원해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물리적 충돌을 피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지 못해 온 것이 현실이다. 그로 인해 범죄 혐의를 밝힐 중요하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해야 할 긴급한 시기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지 못함으로써 범죄자들에게 증거를 은닉·인멸할 시간을 벌어주게 되면서 고위층이 범한 것으로 의심되는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왔다. 정의로운 형사사법을 고려할 때 적지 않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가기관 고위층에 대한 예외 없는 정당한 법집행을 위해서라도 위 형사소송법 규정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에 근거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다는 사유’를 내세워 영장집행을 막는 경우 그 사유를 법원에 소명하게 하고, 법원이 그 사유를 판단하게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범죄 혐의가 있어서 이를 수사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고자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는데, 범행한 자들이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내세워 정당한 법집행을 막는 행위는 더 이상 허용되도록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 바. 수사기관 간의 비협조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인해 검찰의 직접 수사대상이 축소되고, 2021년 공수처가 출범하면서 수사관할에 대한 논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게 되었다. 12·3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은 그 점을 이용해 부당한 주장을 계속했다. 심지어 그 점이 빌미가 되어 구속취소 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복수의 수사기관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범죄자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발동이라는 측면에서 복수의 수사기관들은 서로 협조해서 범죄자를 상대로 단호한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혹은 수사기관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또는 수사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명분으로 인해 수사기관 간의 협조는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타 수사기관을 배제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그리고 범죄자들은 그 틈을 이용해 자신의 죄를 피하거나 모면하려는 구실로 삼았다.

복수의 수사기관이 서로 경쟁하더라도 범죄자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단호한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수사기관 간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거나 또는 이를 이유로 하여 범죄자를 유리하게 하는 수사 상황이 발생해서는 곤란하다. 앞으로 수사-기소 분리의 원리에 따라 검찰 수사기능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외에 중수처(중수청)라는 복수의 수사기관을 가지게 된다. 그런 점에서 복수의 수사기관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그들이 수사 관할의 조정, 협조 등을 잘 형성시켜서 국가형벌권을 적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더 이상 혼란이나 오해가 없게 명확한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5. 공소유지 관련 문제점

### 가. 신속한 재판을 할 의지에 대한 의심

내란 우두머리죄로 기소된 윤석열에 대한 재판은 올해 12월 22일까지 모두 30차례 공판 일정이 정해졌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재판부가 예측가능한 재판을 하려 한다는 의미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신속한 재판을 할 의지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통상 구속기소된 사건은

구속기한이 최장 6개월인 점을 고려하여 6개월 내 재판을 마치고 선고하려고 한다. 그렇게 할 때만이 주요 범죄혐의자의 석방 없이 재판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통상적 실무이다. 물론 정확하고 신중한 재판을 위해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판의 신속성만을 고집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런 사정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재판을 담당한 법원과 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찰의 소명이다. 뒤에서 다시 보겠지만, 현재 윤석열에 대한 공판기일은 한 달에 3, 4차례, 김용현에 대한 공판기일도 2주에 1회 꼴로 개최되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재판에서 이루어진 평균 2.5일 당 1회 간격의 공판기일 진행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재판 진행이다.



(출처: 박은정 의원 SNS)

형사재판에 대한 소송지휘는 재판장이 하는 것이지만, 형사재판의 관여자로서 국가형벌권을 법원에 청구하는 주체는 검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재판장이 신속한 재판을 할 의지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검사는 국가형벌권을 청구하고 집행하는 주체로서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윤석열과 김용현에 대한 공판 진행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신속한 재판을 요청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

검사의 신속한 재판 요청이 있었다면 재판부가 위와 같이 공판을 늘리지 않게 일정을 정하지 못한다. 공판이 지연되고 있는 책임이 우선적으로는 재판부에 있지만, 공소유지를 하고 있는 검찰 역시 공판 지연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 없다.

공소가 제기된 사건은 국민을 충격과 위험에 빠뜨린 내란 혐의 사건이다.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신속한 수사과 재판이 필요하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오히려 일반 사건보다도 수사와 재판이 더 지연되고 있다. 시민들은 검사와 법원에 대해서 과연 해당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고 재판을 하여 내란 범행에 상응한 처벌을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현실은 우리 사법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만든다. 사정이 이와 같기 때문에 지금 출범한 내란특검에게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내란특검은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공소유지를 함으로써 법원으로 하여금 신속한 재판을 하도록 요구하여 국민이 절실히 원하고 있는 정의를 실현할 책임이 있다. 그러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으면 한다.

#### **나.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시킨 검찰**

국가형벌권의 행사는 시민들로부터 범인을 격리시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한편 죄를 범한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처벌함으로써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해야 한다. 그 중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사항은 범인을 시민들로부터 격리시켜 그 위험을 제거하고, 증거은닉과 인멸을 막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법원과 검찰은 이상한 논리와 결정으로 2025. 3. 8. 윤석열을 석방시켰다. 그로 인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자는 지금 아무런 단죄 없이 거리를 활보하고, 시민들이 다니는 식당을 거리낌 없이 방문하고 있다. 이런 비정상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현실을 목격하면서 많은 국민은 우리 사법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무릇 국가형벌권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주체라고 한다면 검사는 내란 우두머리의 석방을 막았어야 한다.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했어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심우정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까지 내란 우두머리를 전격적으로 석방해 줬다. 그런 후에도 내란 우두머리를 재구속할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국가형벌권의 행사와

집행을 위임한 주권자인 국민을 배신한 채 자신에게 맡겨진 소명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6. 재판 관련 문제점

### 가. 현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을 할 의지가 없다.

앞서 검찰의 공소유지 문제점에서 본 것처럼 검찰도 신속한 재판을 할 의지가 없는 것에 더하여 재판을 주재하는 담당재판부도 신속한 재판을 할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신속한 재판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재판이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와 같은 경우라면 그러한 사정을 비판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현재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에 대해서 이뤄지고 있는 재판은 도무지 재판부의 신속한 재판 의지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심을 낳는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담당했던 재판부는 주 4회 재판을 하겠다고까지 했다. 1심 구속기간인 6개월 안에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였고 재판을 주도했었다. 1심 재판은 총 100차례의 공판기일이 진행되었고, 증인신문한 증인만 138명(중복 포함)이나 되었다. 1심 선고는 구속기소된 지 355일만에 이뤄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모두 18개였고, 그 중 16개 혐의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었다.

이러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례와 비교해 볼 때 현재 윤석열과 김용현에 대한 공판정에서는 신속한 재판을 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읽을 수 없다.

12·3 내란 사건은 권력자가 주권자인 국민과 민주주의를 공격한 범죄이다. 그 법정형도 내란 우두머리의 경우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가 있을 뿐이다. 그만큼 공동체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재판을 진행하는 도중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공정하고 정확한 재판을 위해서 재판이 다소 늦어질 수는 있다. 그러한 사정이 있다면 그것을 탓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와 같은 경우가 아닌 한 12·3 내란 사건과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해서 신속한 재판을 할 의지조차 없다는 점은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것이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그와 같은 재판의 지연은 사법권을 위임한

주권자를 배신하는 행위이다.

## 나.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석방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윤석열은 석방되었다. 법원과 검찰이 합작해서 만든 결과이다.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긴 하지만,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해야 한다는 점도 우리 헌법의 중요한 원칙이다.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시킨 법원과 검찰을 비판하는 것은, 그들이 종전까지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유독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에 대해서만 석방의 원리를 적용시킨 것은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을 깨는 것은 특권 계층을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도 선언하고 있지만, 법 앞의 평등의 원칙, 사회적 특수계급의 존재 불인정의 원칙도 중요한 헌법원칙으로 밝히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석방은 법 앞의 평등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윤석열에 대해서만 특권을 인정한 것과 다름 없다.

## 다. 재판 비공개 문제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0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등의 사건에 관한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는 제1회 공판기일의 모두 진술 이후 최근까지 재판 내용이 상당 수 공개되지 않고 있다. 지귀연 재판부는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하여 비공개 결정을 내림으로써 기자들과 시민들이 재판 과정을 제대로 지켜볼 수 없도록 한 채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전면적인 재판 비공개 결정은 내란 사건의 피해자가 모든 국민이라는 점, 재판을 공개해야 하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라는 점, 주권자인 국민에게 내란죄의 실제적 진실에 접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만든다는 점,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피해자인 국민도 자신이 겪은 범죄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알 권리가 있고, 주권자로서 사법이라는 국가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지켜보고 감시할 권리가 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란 주요 사건의 광범위한 비공개 결정은 큰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비공개 재판의 진행은 윤석열을 석방시킨 비정상적인 결정과 상승작용을 일으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란 재판의 공정성에 큰 의혹과 불신을 낳고 있다.

따라서 12·3 내란 사건의 재판은 국가안보 등의 필요성이 있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권자이면서 동시에 내란 사건의 피해자라 할 수 있는 국민이 그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파악하고, 재판이 공정하고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공개되어 진행되어야 마땅하다.

## 7. 정상적이고 정의로운 수사와 재판을 바라며

정상적인 사회와 공동체라면 범죄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실제적 진실을 규명하고, 그 범행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 모두가 목격했듯이 12·3 내란 사건과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되었던 수사과 공소유지, 재판 과정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 그로 인해 많은 국민은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범죄에 대한 단죄, 정의의 실현이 자칫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큰 불안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란특검의 출범을 기다려왔다.

내란특검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12·3 내란 사건과 이에 관계된 모든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 주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범죄에 상응한 단죄와 처벌이 있기를 희망한다.

한편 때로는 수사라는 특성으로 인해 범죄 혐의에 이르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는 완전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서 이러한 점에 대한 대비와 대책도 필요하다. 국회는 특검 수사를 기초로 하되 부족한 진상을 보다 철저히 규명해서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책임에 대해서도 답을 해야 한다. 그렇기에 국회는 내란의 완전 종식을 위해서 내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 등을 목적으로 한 특별법을 만들고, 내란 사건을 제대로 조사할 특별기구를 출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12·3 내란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는 이러한 참담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책무가 있다. 시민들도 그에 대한 관심과 감시를 놓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12·3 내란 사태와 같은 위험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동시에 우리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단단하게 지키는 방법일 것이다.

# 12.3 내란특검이 규명해야 할 과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sup>6</sup>  
협동사무처장 이재근

들어가며

## 1. 국무위원들의 내란 동조(가담) 혐의

현황

규명 과제

관여자

## 2. 비상계엄 관련 후속 조치사항 문건 전달 및 실행 여부

현황

규명 과제

관여자

## 3. 12.4 삼청동 대통령 안가 내란 수사 대책 모의 의혹

현황

규명 과제

관여자

## 4. 대통령실 공직자들의 내란 가담 여부

현황

규명 과제

관여자

## 5. 결심지원실 회의와 제2차 계엄시도 여부

현황

규명 과제

관여자

## 6. 국정원의 내란 가담 여부와 증거인멸 여부

---

<sup>6</sup> 이 자료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이은미 팀장, 김태일 선임간사, 조아라간사)가 <12.3 내란열전\_부역자를 기록하다>페이지를 만들기 위해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정리한 것임.

현황  
규명 과제  
관여자

**7. 경호처의 수사방해와 증거 인멸 혐의**

현황  
규명 과제  
관여자

**8. 검찰의 내란가담 여부와 수사방해 의혹**

현황  
규명 과제  
관여자

**9. 대북전단 무인기 평양 투입 및 북한 도발 유도 등 외환 의혹**

현황  
규명 과제  
관여자

**10. 내란 모의 및 내란목적 살인 예비 의혹**

현황  
규명 과제

**11. 내란특검은 무엇부터 해야하나**

1. 내란특검의 수사대상
2. 내란특검은 무엇부터 해야 할까

**<보론\_내란특검 후속과제\_내란종식특별법의 제정>**

1. 내란종식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2. 국회 내란종식 관련 법안 발의 현황

## 들어가며

---

- 12.3 비상계엄과 내란 발생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1차 수사는 여전히 군과 경찰에 한정되어 진행되었음. 경찰은 당·정 관계자 29명, 경찰 62명, 군 관계자 20명 등 총 111명을 입건하여, 이 중 윤석열을 포함한 8명을 검찰에 송치, 18명은 공수처 등에 이첩하고, 나머지 85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 중으로 알려졌었음<sup>7</sup>. 검찰은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중요임무종사자 11명을 구속 기소<sup>8</sup>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sup>9</sup>하여 총 20명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긴 상태임.
- 6월초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내란특검법)이 처리되고 공포됨. 6월 12일 조은석 변호사(전 감사원 감사위원)가 내란특별검사에 지명된 후 내란특검은 6월 18일 김용현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으로 수사를 개시함.
- 내란특검은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법원에서 기각), 1차 소환조사, 2차 소환조사 통보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음. 한덕수, 김주현 등에 대한 소환조사 등도 이뤄지고 있음. 이에 내란특검에서 꼭 규명되고 수사되어야 할 과제를 정리해 제시하고자 함.
- 국무위원들의 내란 동조 의혹, 4인방의 내란수사 대비 의혹, 무인기를 이용한 외환의혹 등 특검의 수사대상 하나하나가 중대한 사안들임. 현재까지 수사와 진상규명이 미진하다고 본 혐의와 의혹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현황과 규명과제를 정리하고, 확인된 관여자를 기록하였음.
- 보론으로 내란특검법 시행이후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필요한 (가칭) 내란종식특별법의 제정방안도 간단히 제시하였음.

---

<sup>7</sup>2025.03.28, [더팩트 우종수 퇴임 후 국수본 수장 공백...계엄 수사 차질 우려](#)

<sup>8</sup> 윤석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sup>9</sup> 군 특수전사령부의 이상현 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김대우 국군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 정보사령부의 고동희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 1. 국무위원들의 내란 동조(가담) 혐의

---

## 현황

- 윤석열과 김용현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에 계엄 선포를 계획하였으며, 이에 앞서 같은 날 오후 8시경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김영호 통일부장관, 조태열 외교부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대통령실로 호출하였음. 이들이 대통령실에 모두 모인 시각은 오후 9시경으로, 참석자는 윤석열과 김용현을 포함한 국무위원 7명과 국정원장으로 국무회의 정족수에 한참 미달하는 인원임. 이후 한덕수의 국무회의 소집 건의에 따라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이 취해졌고, 이에 따라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순차적으로 대통령실에 도착하였음. 오영주 장관을 마지막으로 국무회의 개최 정족수인 11명이 충족되자, 윤석열은 오후 10시 17분부터 약 5분간 국무회의를 진행한 뒤, 오후 10시 23분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고 알려짐. 유상임 과기부장관 등 나머지 국무위원에게는 국무회의 개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됨.
- 윤석열은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계엄 선포 예정 시각인 오후 10시를 불과 1시간 앞두고 정족수에 못 미치는 인원을 소집하고, 또한 국무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의정관조차 부르지 않았던 점 등을 미뤄 볼 때 애초 국무회의를 정식으로 소집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 모임이 ‘국무회의’ 외형을 갖추게 된 것은 한덕수의 건의 때문임.
- 한덕수는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이유는 국무위원들을 모아 계엄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국무회의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계엄 선포 시간을 늦춘 뒤, 정족수가 채워지자 더 이상 다른 장관들을 기다리지 않고 회의를 시작해 약 5분간 형식적인 절차만 거친 후 계엄을 선포한 점을 고려하면, 한덕수의 국무회의 소집 건의는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형식적으로나마 확보하려는 시도였을 가능성이 큼.

- 한덕수는 그동안 비상계엄에 반대해 왔으며, 포고령과 비상계엄 선포문과 관련해서도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해당 문서를 보거나 전달받은 기억이 없다고 국회와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일관되게 주장해 왔음. 최상목 또한 포고령이나 선포문을 본 적이 없으며, 비상입법기구 설치 등과 관련된 지시 문건은 윤석열이 아닌 실무자로부터 전달받았고, 해당 문건을 열어보지도 않았다고 진술했음. 이상민 역시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윤석열로부터 어떤 지시도 받은 바 없으며, 다만 대통령 집무실에서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단전·단수 관련 쪽지를 멀리서 본 것뿐이라고 주장해 왔음.
- 2025년 5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계엄 선포 당일인 12월 3일 오후 6시부터 이튿날까지 대통령 집무실 복도와 국무회의가 열린 대접견실의 CCTV 영상을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의 국회 증언이나 기존 경찰 조사에서 진술과 다른 장면들이 포착됐음. 언론보도에 따르면 CCTV에는 지난해 12월 3일 한덕수가 용산 대통령실 2층 대접견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전 포고령 문건을 받아서 확인·검토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었다고 함. 또한 한덕수가 포고령 문건을 주위에 있던 국무회의 참석자들과 공람하는 장면, 이상민이 언론사 단전·단수 외 다른 지시를 받는 장면도 담긴 것으로 전했음.
- 그런 만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내란동조(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 되어야 함.

## 규명 과제

1.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비상계엄 가담, 동조, 묵인 여부
2. 윤석열이 국무위원 6인과 국정원장을 먼저 소집한 이유와 이들의 내란 모의 여부
3. 급조된 국무회의 등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 여부

## 관여자

- 윤석열 (구속기소후 구속취소로 석방)
- 한덕수 전 국무총리
-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조태열 외교부장관

- 김영호 통일부장관
-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구속기소)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배석)

## 2. 비상계엄 관련 후속 조치사항 문건 전달 및 실행 여부

---

### 현황

-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오후 7시 20분경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삼청동 대통령 안가로 불러 김용현과 함께 비상계엄 계획을 전달하고,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를 포함한 경찰의 협조를 지시했음. 이후 윤석열과 김용현은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김영호 통일부장관, 조태열 외교부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대통령실로 호출하였음.
- 검찰의 윤석열 공소장에 따르면 윤석열과 김용현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각 부처 장관들인 국무위원들이 취해야 하는 조치 사항들을 문서로 작성 출력해, 국무위원들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다고 함.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윤석열이 국무위원 6명과 국가정보원장을 호출한 목적은 국무회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계엄 관련 지시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음.
- 지금까지 확인된 비상계엄 관련 지시문건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등 5명에게 전달된 것임. 그러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월 23일 윤석열 탄핵 심판 4차 변론에서 자신이 6~7장의 문건을 작성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전 장관 등에게 전달했다고 증언 한 바 있음. 또한 2025년 2월 11일 윤석열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국회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수사기관의 참고인 조사에서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후 대통령실 대접건실로 돌아와 한덕수에게는 자신의 일정에 대신 참석해달라고 부탁했고, 최상목에게는 경제, 조태열에게는 미국과의 관계, 조규홍에게는 의료, 오영주에게는 소상공인 대책, 송미령 본인에게는 농산물 물가 관리를 지시했다고 진술했음.
- 또한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로부터 지시 문건을 전달받은 최상목은 곧바로 거시경제금융회의(일명 F4 회의)를 소집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회의를 진행하였음. 이와 관련해, 최상목이 문건에 명시된 '예비비 확보'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한국은행 차입을

염두에 두고 F4 회의를 소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최상목은 문건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으며, 문건 역시 윤석열이 아닌 실무자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상민 또한 윤석열로부터 조치 사항을 지시받고 소방청장에게 경찰의 단전·단수 요청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윤석열로부터 지시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음.

- 그런 만큼 현재까지 확인된 비상계엄 관련 지시문건 외에 국무위원들에게 전달된 조치사항 문건이 있는지 여부와, 확인된 또는 확인되지 않은 지시문건의 구체적 실행 여부에 대해 수사해야 함.

## 규명 과제

1. 지금까지 확인된 5개의 조치사항 지시문건 외에 국무위원들에게 전달된 지시 사항(문건 또는 구두 지시)의 유무 및 지시문건의 실행여부
2. 조태열에게 전달된 지시문건의 내용, 계엄 선포 이후 외교부 조치사항과의 관련성
3. 최상목에게 전달된 지시문건과 F4 회의, 계엄 선포 이후 기획재정부 조치사항과의 관련성
4. 포고령에 전공의 등 의료인 업무 이탈 시 처단 내용이 포함된 경위와 복지부의 사전 모의, 관여 여부
5.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을 구체적으로 실행한 이상민에 대한 추가 수사와 기소

## 관여자

- 조지호 전 경찰청장(구속기소후 보석 석방)
-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구속기소)
- 조태열 외교부장관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그 외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 3. 12.4 삼청동 대통령 안가 내란 수사 대책 모의 의혹

---

#### 현황

- 비상계엄이 해제된 2024.12.04. 19:30경,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비서관, 이완규 법제처장이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가에서 약 1시간 정도 회동한 사실이 확인됨. 특히 당초 회동 참가자가 4인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경찰 수사 결과 한정화 법률비서관도 현장을 방문했던 것으로 밝혀짐. 이들은 모두 법률에 정통한 검사 및 판사 출신이자, 이완규를 제외하면 검찰·경찰 수사에 개입 및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이 모임의 성격이 계엄 실패 이후 법률 대응 방안을 모색하거나 향후 예정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됨. 이들은 해당 모임의 목적이 단순한 ‘연말 회동’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김주현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완규 법제처장이 모임 이후 휴대폰을 교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은 더욱 커졌음.
-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가는 대통령만 사용할 수 있는 보안시설임. 이러한 보안시설에서 정부 핵심 고위공직자들의 회동이 윤석열의 참석이나 지시 없이, 공무와도 무관한 연말 회동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움. 모임을 소집한 것은 이상민 장관으로 알려져 있으나, 윤석열의 회동 지시가 있었는지, 회동 내용을 보고 받았는지, 특히 계엄 사태나 이후 수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이 확인되어야 함. 또한 안가모임에 참여한 인원들 일부가 회동 종료 직후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 삼각지로 이동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만큼, 회동 종료 직후 행적에 대해서도 상세히 밝혀져야 함.
- 또한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은 회동이 있었던 바로 다음 날인 12월 5일,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에게 전화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고 질문한 사실이 알려짐. 이에 강의구는 “비상계엄 선포”라는 제목 아래 “2024년 12월3일 22:00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적고,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의 서명란이 포함된 비상계엄 선포문을 새롭게 작성해 한덕수의 서명을 받음. 그러나 며칠 뒤 한덕수가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했고, 이를

보고 받은 윤석열이 ‘사후에 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라면서도 한덕수의 뜻대로 하라고 지시해, 결국 문건을 폐기했다고 함. 이는 사실상 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사후에 공문서 조작으로 메꾸려고 했다는 것이며, 이같은 시도가 삼청동 안가 회동 바로 다음 날에 김주현의 전화로 시작되었는 점에서 삼청동 안가 회동이 계엄 후 진행될 수사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실행하기 위한 모임이었다는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음.

## 규명 과제

1. 윤석열이 회동 소집을 지시 혹은 보고 받았는지 여부
2. 대통령 안가 모임에 밝혀진 다섯명 외에 추가 참석자가 있는지 여부
3. 회동에서 오간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수사대응 및 증거인멸 여부
4. 회동 종료 이후 참석자 5인의 구체적인 행적

## 관여자

- 김주현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 이완규 법제처장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
-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부속실장

## 4. 대통령실 공직자들의 내란 가담 여부

---

### 현황

-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가 소집되었던 시각에 대통령 부속실은 수석비서관 이상 회의를 소집하여,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이도훈 홍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대통령실로 모였음. 대통령실 참모진들은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는 있으나, 대통령실 참모진들이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하고, 사후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 계엄 관련 증거들을 은폐하려 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음.
- 김정한 수행실장과 강의구 부속실장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소집을 위해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취함. 특히 강의구는 국무위원들에게 배포될 ‘비상계엄 선포문’을 미리 출력해 김용현에게 전달하고,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국무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상계엄 선포문에 대한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롭게 문서를 작성해 한덕수와 김용현의 서명을 받았다가 폐기하기도 함.
- 또한 비상계엄 선포 직후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전후로,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은 잇따라 휴대전화를 교체함. 정진석 비서실장은 2024년 12월 7일 오전 10시 37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에 휴대전화를 교체했고. 강의구 부속실장은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다음 날인 12월 15일, 휴대전화와 부속실 컴퓨터를 모두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024년 12월 12일과 13일에 총 세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교체했고, 홍철호 정무수석은 2024년 12월 5일, 2025년 2월 18일 두 차례, 이도훈 홍보수석은 2024년 12월 6일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됨. 이처럼 대통령실 참모진이 계엄령 선포 이후, 혹은 탄핵소추안 가결 전후로, 무더기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이유에 대해 수사가 필요함.
- 정진석 비서실장은 윤석열 파면 이후 처음 시행된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규정을 근거로 비서실장과 경호차장 명의의 ‘불승낙 사유서’를 제출해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아울러 정진석

비서실장과 윤재순 총무비서관의 지시로, 대통령 선거 전후로 대통령실에서 사용된 PC와 생산된 문서 및 서류를 무단으로 폐기함.

- 대통령실 참모진들의 비상계엄 가담, 실행, 수습 등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함

## 규명 과제

1. 비상계엄 선포문, 포고령, 국무위원들에게 전달된 지시사항 문건 등 주요 문건의 작성 및 배포 과정에 대통령실 참모진이 관여했는지와 그 역할
2. 비상계엄 해제 이후 수습책 논의 과정에 대통령실 참모진이 관여했는지 여부
3.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실 참모진들의 휴대전화기 교체 이유
4. 대통령실 자료 폐기를 통한 내란 증거인멸 의혹

## 관여자

-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 김정환 전 대통령비서실 수행실장
-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 김주현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 홍철호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 이동운 전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
- 성명불상의 대통령실 행정관, 비서관

## 5. 결심지원실 회의와 제2차 계엄시도 여부

---

### 현황

-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03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었음. 그러나 윤석열은 이를 즉각 이행하지 않고,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지하에 있는 결심지원실로 이동하여 오전 1시 16분경부터 1시 47분경까지 김용현 국방부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최병욱 국방비서관 등과 함께 회의를 진행함. 이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2차 계엄 모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검찰의 윤석열 공소장에 따르면, 회의 직후인 오전 2시 13분경, 김용현은 광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재차 투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드러남. 이로 인해, 결심지원실 회의에서 제2차 계엄 시도가 논의되었을 가능성이 더욱 짙어지고 있음.
- 따라서 해당 회의에 누가 참여했는지, 어떤 내용이 논의되었는지, 그리고 2차 계엄 시도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진상규명이 필요함.

### 규명 과제

1. 결심지원실 회의 참석자 명단
2. 결심지원실 회의에서의 2차 계엄 모의 등 논의 내용

### 관여자

- 윤석열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 인성환 전 국가안보실 제2차장
- 최병욱 전 국방비서관
- 성명불상의 대통령실 행정관, 비서관

## 6. 국정원의 내란 가담 여부와 증거인멸 여부

---

### 현황

- 홍장원 국가정보원 제1차장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53분경 윤석열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가정보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는 지시를 받고 이어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대상 14명의 명단과 이들의 소재파악을 요청받았음. 홍장원은 윤석열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12월 3일 오후 11시 30분 국정원 긴급 정무직회의에 참석한 후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대통령과의 통화, 방첩사령관과의 통화내용을 보고 하였음. 이후 12월 6일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 면담을 통해 해당 내용을 폭로함.
- 그러자 조태용 국정원장은 홍장원 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비상계엄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어떤 조치를 하거나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국회에서 증언해 왔음. 그러나 국회 증언과 달리 조태용은 2024년 12월 18일 경찰조사에서 “홍장원 1차장으로부터 대통령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했다’, ‘방첩사에서 한동훈대표와 이재명대표를 잡으러 다닌답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남. 또한 윤석열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건희 여사가 비상계엄 선포 전날과 당일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남.
- 또한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12월 6일, 윤석열과 홍장원의 비화폰 통화 기록이 삭제되기 직전,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음. 12월 6일은 홍장원이 국회 정보위원장 및 여야 간사와 면담하면서 윤석열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하고 윤석열과 통화 등 4건의 비화폰(PSS-1000) 통화 내역을 공개한 날임. 홍장원의 폭로 이후 국정원 측이 경호처에 비화폰 ‘보안 조치’(원격 로그아웃)를 요청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임.

### 규명 과제

1. 비상계엄과 내란 모의, 실행, 사후 수습 과정에서 국정원의 개입 여부와 역할

2.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건희 여사가 계엄 전후 문자를 메시지를 주고받은 배경과 이유
3. 국정원의 윤석열과 홍장원간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 지시와 증거인멸 개입 여부

#### 관여자

-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 상명불상의 국정원 직원

## 7. 경호처의 수사방해와 증거 인멸 혐의

---

### 현황

-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경호 및 수행하는 기관이자 보안 유지를 담당하는 만큼 윤석열 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을 것으로 합리적 추측이 가능함. 특히 주요한 계엄 모의가 이뤄진 삼청동 안전가옥 등은 경호처가 관리하는 보안시설인 만큼, 경호처가 계엄 모의 및 선포 과정에 직접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여부가 명확히 밝혀져야 함. 현재까지 밝혀진 수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은 계엄 선포 직전인 당일 18:20경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삼청동 안가로 불러 계엄 관련 세부사항을 지시했는데, 이때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이들에게 연락해 삼청동으로 소환 및 직접 마중나가 안가로 데려오는 등 실무적인 역할을 함.
- 한편 대통령 경호처는 계엄이 해제된 이후 김성훈 차장이 직무배제될 때까지 수사기관의 수사를 적극적으로 가로막으며 진상규명을 방해했음. 법원에 의해 정상적으로 발부된 윤석열 체포영장과 삼청동 대통령 안가 및 경호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행사해 방해하는 한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공관과 집무실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까지도 인근에 대통령 관저가 있다는 이유로 출입을 저지함. 당시 박종준은 경찰과 합의해 압수 대상물을 임의제출하되 경찰관 1명을 공관에 들여보내 입회시켰지만, 김성훈 경호처장이 이 사실을 박종준을 거치지 않고 윤석열에게 직보하자 윤석열이 박종준을 질책하고 공관촌에서 압수조서 등을 작성하던 경찰들이 밖으로 쫓겨났다는 사실까지 알려짐.
- 또한 대통령경호처는 보안용 휴대전화인 비화폰을 관리하는 부처임. 계엄 사태를 전후하여 역할을 수행했거나 관여된 주요 인물들은 경호처가 지급한 비화폰을 통해 소통하였음. 따라서 비화폰과 그 사용 기록은 그 자체로 내란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가담한 책임자들을 형사처벌할 핵심 증거들임. 그러나 김성훈은 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인 지난해 12월 7일, 전체 비화폰 안의 단말기 데이터 삭제를 직원들에게 지시하였고 이에 직원들이 경호처 서버에서 원격 로그아웃하는 방법으로 비화폰 단말기 내의 통화기록을 삭제할 수 있지만 위법의 소지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

- 경호처는 군사기밀 등을 이유로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거부하다, 김용현이 직무에서 배제된 뒤에야 임의제출 형식으로 경찰 수사에 협조하기 시작했음. 특히 김성훈의 비화폰 삭제 지시는 윤석열의 지시였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조직적인 내란 사태 증거인멸이 의심됨. 조직적 증거인멸 전말에 대한 수사가 요구됨.

## 규명 과제

1. 대통령 경호처가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로부터 받은 지시와 수행한 구체적 역할
2. 계엄 해제 이후 대통령집무실, 공관촌, 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 거부 및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내란사태 수사 방해에 대한 윤석열과 경호처 수뇌부의 세부 지시 사항
3. 경호처 수뇌부의 비화폰 데이터 삭제 지시 및 조직적인 증거인멸 지휘 여부

## 관여자

- 윤석열
-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 이광우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

## 8. 검찰의 내란가담 여부와 수사방해 의혹

---

### 현황

- 검찰은 계엄 이후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축소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특히 핵심 피고인인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신변을 경찰보다 먼저 확보하기 위해 윤석열과 김주현 민정수석까지 나섰던 정황이 있음. 12월 6일 경찰이 김용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당일 저녁 김선호 국방부 차관에게 전화해 김용현의 비화폰 연락처를 받았고, 이후 친윤으로 분류되는 이진동 대검 차장이 김용현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남. 김용현은 또한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의 이찬규 부장검사와의 통화했는데, 이 때 김용현은 윤석열에게 보고 후 이야기하겠다고 했고 이후 윤석열은 김용현에게 “김주현 민정수석과 협의하라”고 지시했다고 함. 김주현은 국회 청문회에서 김용현 출석 관련하여 검찰과 통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없다고 주장했지만, 김용현과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긍정도 부정도 못하고 “기억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함.
- 경호처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도 검찰은 경찰 수사에서는 피의자 신분인 김성훈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경찰의 김성훈과 이광우의 구속영장을 세번이나 거절하여 수사에 차질을 유발하고, 경호처 측에 비화폰 서버의 통화기록 등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주었음. 이에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조차 검찰의 구속영장 불청구가 부적절하다며 청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마지못해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영장실질심사에는 검사를 한명도 보내지 않아 결국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됨.
- 또한 검찰이 내란에 직접 가담했다는 정황도 확인됨.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이 방첩사 송제영 과학수사센터장(대령)에게 선관위 서버 확보를 지시하며 ‘검찰·국정원 등 전문가 그룹이 올 거다’이라고 언급했고, 이에 송제영이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박건영 법과학분석과장과 네차례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음. 법무부는 계엄 직후 교정시설을 점검하는 간부회의를 열었고, 모 구치소에서 국회의원이 잡혀 오면 구금할 여력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제보도 제기됨. 검찰과 법무부가 내란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

- 내란범들이 기소된 후에도 검찰은 납득할 수 없는 공소유지로 국민적 의혹과 분노를 유발함.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 당시 재판부조차 ‘상급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음에도 항고 포기를 지시해 윤석열을 석방시켰음. 또한 윤석열과 내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공소 유지를 담당한 검사들은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구하거나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등 제대로 된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음. 결국 정권이 교체되고 조은석 내란 특검이 출범한 후에야 김용현과 노상원 등에 대한 추가 기소 및 구속영장 발부가 이루어졌음. 이러한 불성실한 기소와 공소유지의 배후에 심우정 검찰총장 및 검찰 수뇌부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 또한 제기됨.

## 규명 과제

1. 12월 8일 김용현 검찰 조사 출석 전 심우정 검찰총장 및 이진동 대검차장, 김주현 민정수석 간 소통 여부, 비화폰 사용여부 및 경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전략을 모의했는지 여부
2. 내란 당시 검사가 중앙선관위 청사에 출동했는지 여부 및 관련하여 검찰 수뇌부가 윤석열 혹은 군으로부터 선관위 서버에서 부정선거 주장 관련 증거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
3. 윤석열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결정 관련, 심우정이나 여타 대검 수뇌부가 윤석열 측 인사나 대통령실과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심우정의 즉시항고 포기관련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
4. 윤석열 및 내란피고인 공소유지관련 심우정이나 대검 수뇌부가 공소유지 담당 검사들에게 연락하거나, 지침을 내렸는지 여부

## 관여자

- 심우정 전 검찰총장
- 이진동 전 대검찰청 차장
- 김주현 전 민정수석
- 박건영 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장
- 송제영 방첩사 과학수사센터장

## 9. 대북전단 무인기 평양 투입 및 북한 도발 유도 등 외환 의혹

### 연말

-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도 반드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함. 내란 피의자들이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증언과 제보가 다수 있었음. 2024년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북한 오물풍선 원점타격 지시 등임. 이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로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에 해당하며, 한반도 주민의 생명과 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임. 그럼에도 국방부가 무인기 침투 의혹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드론작전사령부는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서 기존 검찰이나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의 수사는 그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음.
- 자료 폐기 등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음. 계엄 직후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검찰에 자진 출석했던 12월 8일에는 드론작전사령부 예하부대 컨테이너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로 인해 평양에 투입되었던 무인기 장비가 불타 없어졌다는 의혹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음. 여기에 더해 드론사령부 예하 101드론대대와 드론교육연구센터가 2024년 12월 중순부터 활용가능한 모든 문서세단기를 동원해 자료를 삭제하고 있다는 제보도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공개됨. 드론작전사령부의 비행 로그 기록 삭제 101드론대대는 북한이 10월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가 출발한 곳으로 지목한 지역인 백령도를 관할하는 부대임. 또한 2025년 3월에는 드론작전사령부가 비행로그기록 관리 지침을 만들면서, ‘자료 소거’, ‘기록 삭제’ 등 증거인멸 근거를 만들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됨.
- 2025년 6월 말 언론보도로 인해 기존에 알려진 10월 뿐 아니라 계엄 직전인 11월 중순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침투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됨. 10월 무인기 침투 후 북한이 무인기를 포착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윤석열과 김용현은 박수를 치며 기뻐했고, 사령관에게 ‘또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함.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담당 영관급 중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무인기 작전을 지시했으며, 작전 이후 군 내부에서 조직적인 은폐 시도도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 공수처는 지난 6월 초 평양 무인기 침투와 관련하여 방첩사

군사정보실 측과 드론사 방첩부대장이 주고받은 이메일 보고서를 확보했으며, 내란특검 또한 해당 내용이 기록된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짐.

- 관련하여 국가안보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드론작전사령부, 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진상 규명이 필요함.

## 규명 과제

1. 윤석열과 김용현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무인기의 평양 투입을 지시하는 등 외환죄 혐의
2. 계엄 해제 이후 드론작전사령부가 증거인멸을 위하여 드론 컨테이너 화재를 유발하였거나, 관련 자료를 파쇄할 것을 지시했는지 여부

## 관여자

- 윤석열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 10. 내란 모의 및 내란목적 살인 예비 의혹

---

### 현황

- 12.3 내란 과정에서 정치인 구금 시도와 군과 경찰의 체포조 구성 등은 일부 수사가 진행되었지만, 노상원을 중심으로 한 정치인과 언론인, 시민사회 인사에 대한 체포와 살인 계획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음.
- 2025년 2월 언론에 공개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는 500여 명의 수거 대상과 살해 계획과 윤석열의 3선 장기 집권 구상까지, 잔인하고 끔찍한 계획들로 가득함. ‘노상원 수첩’에 적시된 500여 명의 1차 체포 대상 명단 중 일부는 여인형(방첩사령관)이 김용현의 지시를 받아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게 전달한 체포 명단과 일치하였음.
- 경찰은 지난해 12월 노 전 사령관을 체포하며 이 수첩을 확보해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수첩 내용과 수첩과 관련된 혐의를 공소장에 아예 포함시키지 않았음
- 노상원 수첩의 내용은 단순한 망상이나 허황된 계획이 아니라 김용현과 공모한 구체적인 내란 모의, 내란 목적 살인 예비 등의 실행계획으로 봐야 할 것임. 민간인 신분으로 군을 움직여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경악할만한 계획에 국가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군인을 실제 동원하려 했다는 점에서 철저한 수사과 처벌이 필요함

### 규명 과제

1. 노상원과 김용현이 함께 주도한 내란 음모 및 내란목적 살인 모의, 예비 혐의
2. 노상원 수첩의 실제 실행 여부

### 관여자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 11. 내란특검은 무엇부터 해야하나

---

## 1. 내란특검의 수사대상

### <내란특검법 2조 수사대상>

1.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범죄 혐의 사건
2.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국회 통제 및 봉쇄, 인적 피해 및 국회 기물 파손 등 범죄 혐의 사건
3.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군·경 등의 물리력을 동원한 국회 표결 방해 시도 행위 및 기타 그 외의 방법으로 표결 방해 시도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4.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등을 체포 및 감금 시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5.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사, 정당 당사 등의 불법 점령 및 압수수색 등 범죄 혐의 사건
6.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켰다는 범죄 혐의 사건
7.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비상계엄 선포 건의 및 구금시설을 마련하거나 **내란**목적의 살인, 예비, 음모 및 **내란**을 선동, 선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8.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여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려고 하였다는 범죄 혐의 및 이를 통하여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 방법으로 **내란**, 군사반란을 시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범인도주·은닉, 범죄은폐, 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 또는 재판 및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연 등을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건 등 **내란** · 외환 행위와 관련된  
고소 · 고발사건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 2. 내란특검은 무엇부터 해야 할까

-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명되고 나서부터 개문발차 형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 특히 김용현, 여인형, 문상호 등 내란주범이 보석이나 구속만기로 석방되는 것을 막기위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청구해 출석을 끌어냄. 또한 외환죄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으며 한덕수, 김주현 등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함.
- 특검법의 언론브리핑 조항을 활용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음.
- 내란특검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보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김용현 등 주요임무종사자의 내란행위 진상규명과 철저한 공소유지(우두머리와 주범들의 구속)
- 무인기 침투 등을 통한 북한 도발 유도 등 외환 혐의 진상규명도 중요
- 한덕수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내란 주요임무종사자들에 대한 추가수사와 추가기소도 필요함
- 안가 4인방과 검찰, 경호처 등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범죄은폐, 수사방해 의혹의 진상규명도 진행해야 함
- 노상원 수첩으로 확인된 내란목적 살인 예비, 음모 혐의의 진상규명도 필요함
- 특검에게 주어진 수사기간은 90+30+30로 최대 150일, 길다면 길지만 수사대상을 고려하면 결코 길지 않은 시간임. 1.23 내란과 관련된 주요 범죄 혐의를 입증하고 공소유지하는 것에 주력해야 할 것임. 합법적으로 탈옥한 내란 우두머리의 재구속도 중요함.

# <보론\_내란특검 후속과제\_내란종식특별법의 제정>

---

## 1. 내란종식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 내란특검법이 제정 시행되고, 특검이 출범하여 수사가 진행면서, 내란외환행위의 형사처벌은 가시권에 들어온 상황임
- 그러나 12.3내란은 단순히 형사처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12.3내란의 전모를 샅샅이 살펴 진상을 규명하고, 이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과제를 폭넓게 제안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도 필요함

## 2. 국회 내란종식 관련 법안 발의 현황

- [\[2209595\] 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민형배의원 등 16인\), 2025년 4월 4일 발의](#)
- [반헌법·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를 국회의장 직속으로 둬](#)
  
- [\[2210249\] 12.3 비상계엄 등 내란행위 진상규명 및 주도자 등의 처벌을 위한 특별법안\(윤종오의원 등 13인\) 2025년 4월 30일 발의](#)
- [내란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독립위원회 형태로 구성](#)

## 3. (약칭) 내란종식특별법의 제정

- 참여연대는 내란종식특별법의 제정이 시급하다보고 이 법률을 제정할 것을 지난 4월 29일 <내란 종식·민주주의 회복 필수과제> 제안 기자회견에서 밝힌바 있음
- 법안명 : (가칭)12.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법
- 역할 : 12.3 내란의 전모를 밝히는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및 기록, 내란 관련자의 확인 및 공직 퇴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후속조치 등의 역할을 담당할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 특징 : 12.3 내란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뿐만 아니라 내란에 직접 가담하거나 은폐, 비호한 자들을 확인하여 고발, 수사의뢰하거나 공직에서 퇴출시킴.

- <내란종식 특별법 개요(안)>

구분	세부 내용	비고
법안명(약칭)	- (가칭)12.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법(내란종식 특별법)	
진상조사기구	- 12.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기구 위상	- 특별법에 근거한 진상조사기구	
심의의결 대상	- 12.3 내란의 진상 및 책임규명에 대한 사항(청문회 포함) - 12.3 내란의 가담자 및 관련자(처벌 및 징계, 공직 퇴출 등 면직 대상)에 대한 사항 - 내란의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대한 사항 - 국가기관의 사과, 내란 관련 불이익처분을 받은 자의 지위 회복 등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후속조치에 대한 사항 - 12.3 내란의 영구기록에 대한 사항	
조사 범위	- 12.3 내란 범죄 행위와 비상계엄 준비 집행에 대한 모든 사항 - 12.3 내란, 비상계엄의 가담자 및 관련자의 확인을 위한 모든 사항 - 내란의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사항	
활동기간	- 조사개시후 1년 6개월 - 6개월 내에서 연장가능 - 6개월의 보고서 작성기간	
조사기구의 권한	-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조사권한 - 고발 및 특검요청권 - 청문회 출석시 동행명령 - 자료제출 거부 못하게 함(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 권한) - 재판중 자료 문서송부촉탁 - 조사방해행위 제재규정 - 내란 관련 자료 정리 및 보존 - 중간조사 결과 등 대국민 보고 절차 제도화	
공익제보 보호 및 책임감면 조항 등	- 내란행위 진상규명 공익제보자 보호 규정을 둠 - 공익제보자에 대한 책임감면 규정을 둠 - 조사 협조자에 대한 책임 감경 규정을 둠 - 대통령기록물 공개 관련 예외 규정을 둠	

12.3 내란 특검 앞에 놓인 과제:  
진실, 책임, 정의 토론회 (2025.7.8.)

## 내란죄에 관한 법철학적 고찰 -처벌, 정화, 정상화-

건국대 이재승 

### 주요 내용

- 출발점: 계엄(warfare)과 법률전쟁(lawfare)
- 대역죄의 처벌사례
- 독일의 공화국수호법(1921)/히틀러재판(1924)/나치정화법(1946)
- 야스퍼스의 죄와 책임의 분류—범죄와 집단적 도덕적 죄(독일인 전체)
- 아르헨티나--정당한 복종법(1987)
- 외국의 형법규정
- 한국의 형법과 군형법상의 분류(형사정책적 규정)
- 내란죄/내란선동죄/군사반란죄/인도에 반하는 범죄/침략범죄 계획죄
- 다중범죄 접근법: 군인의 분류와 민간인의 분류(형벌, 명예형과 전역조치, 강화교육, 음모이론의 극복과 새로운 시민교육)—정화와 정상화 사이에서

## 대역죄, 폭군, 저항의 역사

1. 로마왕정에서 초기 정치적 개혁 군주들의 죽음, 그라쿠스 형제들의 죽음—쿨랑주 <고대도시>
2. 스파르타에서 에포로스(ephorus)에 의해 살해당한 클레오메너스왕(플루타르코스)
3. 주해학파 바르톨루스 데 사소페라토(1313-1357)-권원상의 폭군/집행상의 폭군
4. 폭군방벌론자(monarchomaques)—종교갈등에 따른 다른 종교의 군주를 살해하다
5. 로크-인민의 저항권(appeal to Heaven)
6. 맹자-왕도정치와 역성혁명(훈군(암군), 폭군)

## 폭군에 대한 응징

- 로마 원로원의 <hostis publicus> 선언→누구라도 죽일 수 있음 (미국 헌법-의회의 대역죄 재판)
  - 인민의 저항으로 더 큰 소동과 혼란이 야기된다면 저항은 금지된다 (아퀴나스, 그로티우스)-  
>>폭군은 건들지 말고 일격에 죽여라!!
  - 사소페라토—찬탈군주는 인민 누구라도 군인이 되어 죽일 수 있으며, 타락군주는  
하위공직자(ephorus)에 의해 축출 제거되어야 한다(현재 경로).
  - 루이16세가 베르사이유 궁전을 떠나면서 왕권을 포기함으로써 자연인으로 돌아간 것이므로 더 이상  
인민과 모순되는 국왕이 아니므로 그를 처형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칸트, 1797년 윤리형이상학)
- 권력의 한계를 유월하는 지배자는 복종계약(服從契約)을 스스로 위반한 것이고 따라서 이제 지배자가 아니라 한갓 사인(Privatperson)으로 전락하며, 이 자에 대하여 공민(Staatsbürger)은 자연상태의 인간 (Mensch)으로서도 자기방어권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포이어바흐, 1798 대역죄에 대한 철학적-법률적 고찰).

## 미국헌법--반역죄

제3조(사법부)

제3항 (반역죄)

1. 합중국에 대한 반역죄는 합중국에 대하여 전쟁을 일으키거나, 또는 적에게 가담하여 원조 및 지원을 할 경우에만 성립한다. 누구라도 명백한 상기 행동에 대하여 2명의 증인의 증언이 있거나 또는 공개법정에서 자백하는 경우 이외에는 반역죄의 유죄선고를 받지 아니한다.
2. 연방의회는 반역죄의 형벌을 선고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반역죄의 선고로 사권이 박탈된 자는 자기의 생존기간을 제외하고 그 혈통을 모독하거나, 상속금지나 재산몰수를 초래하지 아니한다.

lawfare와 warfare

법률전쟁(lawfare)의 정의: 국제적 또는 국내적 사안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전쟁보다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수단으로 또는 전쟁에 대한 은근한 증속물로서 법체계와 제도의 사용이다(법률작전 legal operation).

내란 사건은 2022년 대선을 전후하여 정치인 이재명 개인에 대한 법률전쟁(lawfare)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자신과 아내의 죄업을 덮기 위해서는 “임기 5년 짜리” 대통령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파(윤석열은 후계자를 키울 생각이 없었다)**의 장기 집권이 필요했다. 그 수단은 전쟁과 게임(warfare)뿐이다. 전쟁과 게임이 실패하고 탄핵결정이 내려진 다음에도 법률전쟁은 계속되었다. 법률전쟁에 관여한 법비들이 자신의 패전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이재명의 출마자격을 박탈하거나 부패한 정치인으로 몰아세워 낙선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도 잘 안된다는 판단을 냉정하게 내리던 날, 한덕수, 최상목이 동시에 내뿜었다. 그들은 어려운 상황을 관리하는 엄중한 책임을 감당하는 자로서 권한대행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마지막 안간힘을 다했다. 법률전쟁의 주도자와 기획자들은 떠났는데 뭇도 모르는 법률전쟁의 하수인들이 버티고 있다. 탐욕과 교만에 입각한 법률전쟁은 법치주의의 이름으로 계속되고 있다.

\*\*\*\*\*게임령과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 법조인이란 무엇인가?

### 1. 뉘른베르크 법조인재판(Juristenprozess)

“개별적인 살해나 잔혹행위들의 개별사건들이 유죄의 근거가 아니다. ... 유죄인정의 근거는 간단히 말해서 온 나라에 확산되고, 정부에 의해 조직된 잔혹과 부정의 및 전쟁법과 인도주의에 대한 위반의 체제에 참여한 행위이다. 그러한 잔혹, 부정의, 위반이 법의 이름으로 각급법원의 조력을 통해 법무부의 권위 아래서 자행되었다. **살인자의 비수를 법복으로 감추었다(Der Dolch des Mörders war unter der Robe des Richters verborgen).** “

### 2. 사법살인의 와전—재판을 통한 처형(조봉암)→재판을 통한 공직선거권박탈(프리드리히 에버트//롤라)

정치재판의 동기의 변화: 정치적 압력에서→자가발전의 탐욕으로

### 3. 윤석열의 법률전쟁에 가담한 법조인(대통령실의 법조인, 법조인 국무위원, 사건에 관여한 검사, 판사)--악의 축(주도자), 악의의 도구(협력자), 분별력 없는 도구(부화뇌동자)

### 4. 프란시스 베이컨: 범부의 죄와 법조인의 죄의 차이-경계를 침범하는 죄(일신의 개별적 범죄)와 경계표석을 옮기는 죄(법왜곡-사회를 타락시키는 죄)

## 바이마르 공화국 초대 대통령 프리드리히 에버트(1875-1925) 재판

Mitteldeutsche Presse의 편집자 Erwin Rothardt는 에버트가 1918년 1월 베를린 군수산업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원하였기 때문에 제1차세계대전의 패배에 공동책임이 있다고 비난했다. 독립사민당과 스파르타쿠스단이 주도하는 군수산업 노동자 파업에 다수파사민당(MSPD)의 의장으로서 참여하여 조기 종결을 주장하였다. 좌파들은 그를 노동자에 대한 반역자로 몰아세웠고, 우파들은 제1차대전 패배의 책임을 국내의 배반자(Dolchstoß legende)에게 돌렸다. 대통령 에버트는 줄곧 우파들의 공세에 시달려오다가 모욕죄로 소송을 시작한 것이다.

1924년 12월 23일 마그데부르크 법원은 Rothardt에게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에버트의 파업참여는 법적으로는 사실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판결은 ‘안장수리공(Sattlergeselle)은 그곳에서 사라져야 한다’ 는 해당 판사의 정치적 신념을 반영한 것이었다.. 마그데부르크 판결은 반민주 진영의 바이마르 공화국에 대한 증오와 모욕, 선전의 성공이었다. 에베르트는 항소하였으나 그 끝을 보지 못하고 1925년 2월 28일 사망하였다. 그 자리에 오른 힌덴부르크는 공화국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 루이스 이냐시오 룰라 다 시우바 재판(2018)

2010년 임기를 마친 급속노동자 출신 브라질 대통령 다 시우바는 2014년 9건의 부패혐의(현직 노동자당 대통령이 과거 이사로 있던 석유공사가 미국의 정유회사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회사 임직원들이 부패를 저질렀다)로 기소당했다. 그의 아내도 자금세탁혐의로 기소되었다.

대통령은 2017년 7월 12일 뇌물수수, 자금세탁, 직권남용, 사법방해 혐의로 9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18년 항소법원은 룰라에게 12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2018년 4월 5일 연방대법원은 룰라의 인신보호청원을 기각하고 수감을 명령했다. **룰라의 사건은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중인 상태에서 2018년 8월 31일 고등선거법원은 후보자격을 박탈했다.**

당시에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는 룰라의 후보자격을 박탈해서는 안된다고 권고하였다(2018.8.7.) 온라인 뉴스 Intercept가 **룰라의 대선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정치적 음모를 꾸몄다는 정황을 담은, “세차작전”의 검사 델탄 달라노(Deltan Martinazzo Dallagnol)와 담당판사 세르히오 모로(Sergio Moro)간의 텔레그램 대화를 폭로하였다.** 모로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2019-2023) 아래 법무부장관이자 공공안전부장관이 됨으로써 이러한 의혹을 더욱 부채질하였다. 2019년 대법원은 580일 만에 나머지 사건의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석방하였다. 11월 제4연방지방법원은 다시 유죄판결을 더해 형량을 17년으로 늘렸다.

2021년 대법원 에드손 파친 판사는 (유무죄를 다루지 않고) 관할 위반을 이유로 룰라에 대한 유죄판결을 무효화하고 관할법원에 의한 새로운 재판을 정하였다. 2021년 브라질 대법원은 7대3의 표결로 3월 8일 파친 판사의 판결을 승인했다. 길마 멘데스 판사도 다른 사건 판결을 무효화하였다. **모로가 유죄로 사용한 증거들이 법정에서 허용될 수 없고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 1922년 독일 공화국수호법(Republiksschutzgesetz)

외무장관 발터 라테나우 암살 이후 반공화국세력에 대한 처벌법(한시법 5+2) 제정  
(법무장관 라드브루흐)—30-32년 2차 공화국수호법 제정

--공화국수호를 위한 라이히법원(Staatsgerichtshof zum Schutze der Republik) 설치—특별법원의 설치는 헌법위반에 해당한다는 논란, 헌법개정에 해당하는 것은 3분의 2 의결을 거처도록 함

--비르트 수상, 라드브루흐 장관 의회연설—이 법은 극우파를 겨냥함  
--극우파 칼 슈미트—비상사태의 상례화로 조롱하며 자신의 법철학적 주제로 삼음

제2차세계대전 후 아데나워-브란트 정부에서 <극단주의자결의 (Extremistenbeschluss)>를 만들어 좌파에 대한 공격무기로 사용

## 2년간의 살인사건

굼벨( Emil Julius Gumbel)은 1918년 11월혁명에서 1920년 사이에 발생한 정치적 살인사건들에 대한 형량을 비교분석한 소책자를 발간하였다. 당시 쿠르트 투홀스키(kurt Tucholsky 1890-1935)는 이 책을 <독일 치욕의 서>라는 서평을 남겼다.

<2년간 살인사건>에 따르면 2년간 우파들은 314건의 정치적인 살인을, 반면에 좌파들은 15건의 정치적인 살인을 저질렀다. 314건 살인을 저지른 우파들에 대해서 1인에게 종신형 그리고 나머지 살인범에 대해서는 모두 합하여 31년 3개월 구금형이 선고되었으며, 반면 15건의 살인을 자행한 좌파에 대해서는 8명에게 사형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모두 합하여 176년 10월의 구금형이 선고되었다. 이 저작은 나중에 <4년간의 정치적 살인사건>으로 증보되었다.

굼벨(1891-1966)은 수학자, 정치인, 평화주의자이고, 하이델베르크 대학 교수이고, 1932 강의를 박탈당하고, 33년 프랑스로 이주, 40년 미국으로 망명하여 66년 뉴욕에서 사망함

## 내란범죄자 소송의 반면교사--히틀러소송(1924) (1)

히틀러-루덴도르프 소송으로 불림 . 히틀러가 1923년 11월 9일 뮌헨에서 폭동을 기도하여 반역죄로 기소됨.

뮌헨 인민법원 재판장 게오르크 나이타르트(Georg Neithardt)는 히틀러에게 대단한 호감을 갖고 대했다. 히틀러는 법정에서 사심 없는 애국적인 정치인으로서 행세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히틀러가 나중에 대중운 지도자가 되는데 도움을 주었다. 검사는 <공화국수호법>에 따라 히틀러에게 8년형을 구형하였는데, 법원은 5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함.

이 재판의 시작과 동시에 참심원(Laienrichter) 3인(이들은 중간계급에 속하는 인물들이고 나치당원은 아니었음)이 재판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만 히틀러의 유죄에 동의하겠다고 말했다고 함.

재판장을 포함해 4인 전원이 동의해야만 유죄판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죄판결이 성립하지 않으면 라이프치히의 라이히재판소(제국재판소)로 이송되어야 해서…어쨌든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실제로 반역죄는 라이히재판소가 관할하도록 되어 있으며, 바이에른 주가 이 사건을 기소하고 재판하는 것이 일종의 법외곡이었다)–

## 히틀러소송(1924) (2)

히틀러는 당시 오스트리아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서 반역죄를 범한 외국인인 <공화국수호법>에 따라 추방되어야 했음. 법원은 “그토록 독일적으로 생각한 사람” (제1차대전에 독일군대에 4년 반 복무)에게 해당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1924.2.26일 시작된 재판은 1924년 12월 20일 히틀러의 석방으로 종결되었음

루덴도르프(20년 카프-폭동에 관여)는 많은 범죄증거에도 불구하고 1차세계대전의 공적 때문에 무죄방면 되었음.

## 재판 이후

--당시 바이에른 법무장관은 극우보수정당인 독일민족주의국민당(DNVP) 소속 Franz Görtner(1881--1941)였다. 귀르트너는 히틀러의 집권 이후에도 승승장구하여 나치제국에서 법무장관을 역임하였다.

--판사 Georg Neithardt는 판사직을 유지하면서 뮌헨 주상급법원의 법원장을 역임하였다. 37년 히틀러의 감사의 편지를 받고 은퇴한 후 41년에 사망하였다. 2차대전후 정화심판소에서 그는 주범으로 분류되었고, 그의 배우자가 받는 연금이 몰수되었다(뮌헨 정화심판소 1950.5.11). 그 뒤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 이 조치는 철회되었다.

--루덴도르프는 24-28 히틀러와 연결된 정당의 국회의원. 25년 같은 정파에서 대통령후보로 추대(1.1% 득표). 히틀러는 결선투표에서 힌덴부르크 지원. 이때 히틀러는 독일극우파의 영도자가 됨. Ludendorff는 히틀러의 권력장악을 지켜보면서 당시 대통령 힌덴부르크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히틀러가 국가를 나락에 빠뜨리고 국민을 상상할 수 없는 재앙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예언한다” (1933.2.1)

히틀러에게 8년형을 구형한 제2 검사 Martin Dresse는 공무원복구법에 따라 1934.1.1. 강제퇴직당하고, 이에 항의하여 제1검사 Ludwig Stenglein는 사직함.

## 내란죄 검토

### 영현백과 정치적 반대세력의 체포시도

1. 내란집단은 영현백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정치적 반대파를 단순구금이 아니라 척결(살해)하고자 명단을 작성하고 분류하고 실제로 체포를 시도하였다(14명→ 500명→ 1만명).
2. 구체적인 살해계획도 만들어졌다. 이러한 행위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한다.→인도에 반하는 범죄의 기수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최소한 실행의 착수(미수)는 있었다.

#### 국제형사재판소규정 제25조 제1항 (f)

실질적인 조치에 의하여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범죄의 실행을 기도하였으나 본인의 의도와는 무관한 사정으로 범죄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나 범행의 실시를 포기하거나 또는 달리 범죄의 완성을 방지한 자는 자신이 범죄 목적을 완전히 그리고 자발적으로 포기하였다면 범죄미수에 대하여 이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계엄선포가 인도에 반하는 범죄의 실행의 착수이다.→실제로 정치인과 언론인의 체포를 시도하였다.

## 침략범죄인가 외환유치죄인가?

1. 북한을 (드론) 도발하여 반격을 해오면 원점타격을 가해 군사적 정치적 위기를 조성하거나 또는 부분적 또는 전면적 전쟁을 일으키는 것으로...
2. 침략범죄는 양방향적이다. 외환도 외국과의 교전상태 초래를 의미하므로 양방향적이다.
4. 외환죄→외국형법은 .. 지원죄/이적죄, 공모죄 방식 규정. -우리 형법은 **적과의 합세/외국(인)과 통모**를 통해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규정한다(과거 총풍사건).---중국의 형법규정은 유사하게 “결탁” -→따라서 외환죄 적용이 어렵다(**몽골에서 체포된 정보사 장교들은 이러한 통모시도를 한 것으로?**).
5. 이러한 주관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침략범죄는 성립한다(이점은 이재승, < '불법의 제왕' 윤석열의 전쟁범죄 < 민들레 들판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
6. 국제형사재판소규정(2010년 수정조항) 및 국내이행법률에 근거하여 ‘침략범죄 계획죄’로 처벌할 수 있다. --- \*\*도발과 침략범죄에 대해서는 더 상세한 정보가 필요...

## 호주의 반역죄

A person commits an offence, called treason, if the person:

(e) **engages in conduct** that assists by any means whatever, with intent to assist, an enemy: (i) at war with the Commonwealth, whether or not the existence of a state of war has been declared; and (ii) specified by Proclamation made for the purpose of this paragraph to be an enemy at war with the Commonwealth(이적죄); or

(f) **engages in conduct that assists by any means whatever, with intent to assist:** (i) another country; or (ii) an organization(이적죄);

## 뉴질랜드 형법

Section 73 of the Crimes Act reads as follows:

Everyone owing allegiance to the Sovereign in right of New Zealand commits treason who, within or outside New Zealand,-

(a) kills or wounds or does grievous bodily harm to the Sovereign, or imprisons or restrains her or him; or(주권자 살해죄)

(b) levies war against New Zealand; or(내전죄)

(c) assists an enemy at war with New Zealand, or any armed forces against which New Zealand forces are engaged in hostilities, whether or not a state of war exists between New Zealand and any other country; or(이적죄)

(d) incites or assists any person with force to invade New Zealand; or(침략선동죄 또는 지원죄)

(e) uses force for the purpose of overthrowing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or

(f) conspires with any person to do anything mentioned in this section(공모죄).

## 내란범죄에 대한 접근—잠정적 기술

1. 한국 형법 및 군형법상의 3 등급 분류 방식(수괴, 주요임무수행자, 부화수행자)은 일본 구형법에서 유래하지만 다른 나라의 내란죄(대역죄)에서 현재 찾을 수 없다.

2. 브야소나드가 <프랑스 형법>을 참조하여 일본형법을 초안했다고 한다. 그러나 프랑스 형법(1810)에는 그에 일치하는 규정이 없다.

3. 대역죄는 관여자 모두가 정범(principal)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4. 모의에 가담하였으나 사전에 사법당국에 신고한 경우(적극적 후회 등)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독일)

\*\*3등급 분류는 형사정책적인 의미에서 중요한 양형기준을 형법 및 군형법에 도입한 것으로 보임

5. 외국에서는 내란죄와 외환죄를 반역죄/대역죄(high treason)로 부른다. cf. 소역죄(petty treason)

## 윤석열의 내란을 둘러싼 다섯 가지 신화

1.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헌법에 따른 권한 행사이고, 국회 결의를 존중하여 계엄을 해제하였다. 적법한 과정이었다(←국회붕쇄 시도가 반역죄이고, 해제는 국회붕쇄 실패의 결과였다).
2. 대통령은 최고수반으로서 내란죄를 범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다(← 왕도 타기관의 권한을 탈취하는 경우 찬탈자(usurpator)로 분류된다. **엄상섭-국헌문란 규정의 도입배경(신생정치집단 보호-친위쿠데타) 참조, 그로티우스-스파르타의 클레오메네스 왕의 죽음**).
3. 어느 누구도 살해하지 않았으므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선동죄나 예비음모죄도 별한다, 내란목적 살해의 징표(영현백 구입, 체포시도)도 존재한다).
4. 국민을 계몽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가전복 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다(← 범행 동기와 국헌문란의 목적은 다르다).
5. 오히려 대통령의 계엄령에 반발하는 야당과 시민이 내란죄를 범한 것이다(←찬탈자는 저항권의 대상이다. 야당과 시민의 행위는 헌법의 수호행위이다).

## 내란죄의 법리 1(총론)

1. 내란가담자들은 중범(accessories)이 아니라 모두가 정범(principals)이다.
2. 가담자들 사이에서는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내란죄 규정은 총칙 규정에 대한 특칙이다.
3. 지위 및 행위 구분과 그에 따른 처벌은 형사정책적인 분류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4. 보통군인(common soldiers-병과 초급장교)도 내란집단의 구성원이므로 부화수행자가 아니라 주요임무종사자에 해당한다(주요임무 종사자 간의 형량도 편차가 크다). 계엄군으로 조직된 자는 내란집단의 구성원이므로 소요죄에서 보는 바와 같은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가 아니다.
5. **이들에 대한 기소 및 처벌 여부는 형사정책에 달려 있다.**( 미국 군사법에서는 불법적인 명령 수행과 관련하여 병과 달리 **장교**에 대해서 엄격한 책임을 묻는 전통을 갖고 있다).

## 내란죄의 법리 2(내란행위의 부분과 전체)

“내란 가담자들이 하나의 내란을 구성하는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하여 이를 모의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로서의 내란에 포함되는 개개 행위에 대하여 부분적으로라도 그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기여하였음이 인정된다면, 그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하여 내란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한편 내란죄는 그 구성요건의 의미 내용 그 자체가 목적에 의하여 결합된 다수의 폭동을 예상하고 있는 범죄라고 할 것이므로, 내란행위자들에 의하여 애초에 계획된 국헌문란의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일련의 폭동행위는 단일한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단순일죄로 보아야 한다.(출처 :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 내란집단의 구성원은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단일한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내란죄의 주범).
- 누가 내란집단의 구성원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친위내란으로서 대통령이 권좌에서 쫓겨날 때까지, 법률전쟁이 사실상 중단될 때까지 지속적인 가담을 통해 내란집단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 서부지법 습격사건도 소요죄가 아니라 국헌문란의 내란행위의 부분으로 파악할 수 있다.

## 내란죄의 법리 3(내란목적)

“범죄는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이용하여서도 이를 실행할 수 있으므로, 내란죄의 경우에도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가 그러한 목적이 없는 자를 이용하여 이를 실행할 수 있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5.18판결은 국무회의 구성원을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로 보고 있음)

--12.3내란과정에서 행선지나 목적을 전혀 알지 못한 가운데 국회에 출동한 보통 군인이나 경찰은 경우에 따라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는 자로 파악될 수 있음. 그러나 자신에게 고유한 국헌문란 목적이 없다 하더라도 내란집단에 동조하여 그 명령을 수행한 자이므로 내란죄의 정범으로 파악할 수 있다.

## 내란죄의 법리 4(보통군인)

--내란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

--만일, 내란집단의 범위를 축소하고, 보통군인에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이들에 대한 적용범죄는 불법적인 명령에 복종한 데에 대하여 여타 형사책임(특수공무방해죄, 직권남용, 법정 또는 국회의장모욕죄, 협박죄), 군형법상 특수소요(제61조), 수소이탈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동원된 보통경찰에게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것이다. 이것도 형사정책적 합목적성이 작용하는 문제영역이다.

--사전 정보제공자에게 형사책임을 정책적으로 면제하지만 이번 내란에서는 그러한 사례를 찾을 수 없다.

--그러나 형사정책적 고려에서는 사후에 진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사람들에 대해 감면해 줄 필요가 있다.

## 내란죄의 법리 5(침략범죄의 예비와 한계)

--보통군인들은 침략범죄에서 보통군인의 지위와 유사하다.

--침략범죄에 참여한 보통군인에게는 그 자신이 저지른 전쟁범죄를 제외하고 침략범죄의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침략범죄를 모의, 계획, 수행을 총괄하는 지휘부의 구성원에게 침략범죄의 책임을 묻는다. 최초의 내란 모의 계획에 참여한 자의 지위를 설명할 때 침략범죄의 예비는 유용한다.

--국제법은 침략범죄의 기준에 따라 보통군인의 책임을 묻지 않지만 국내법상 내란죄는 사정이 다르다.

--침략범죄의 국제법상 처벌기준에 따르면 내란죄의 성립 및 처벌범위를 과도하게 좁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 전반적으로 국내형법의 논리와 맞지 않는다.

--결국 내란행위의 수행명령을 명백하게 거부하지 아니한 군인은 정범이고 최소한 부화수행자로서 처벌을 면치 못한다. 다만 형사정책적으로 보통군인들을 자제하는 것이 합목적적일 수는 있다.

## 내란죄의 법리 6-천위쿠데타의 특수성-권력상실의 시점을 주목해야

1. 천위쿠데타의 특수성--일반쿠데타의 경우 쿠데타 군대의 퇴각 내지 붕괴로 내란행위가 실질적으로 종료(실패)된다(즉시범). 그러나 천위쿠데타의 경우 1차 실패하더라도 내란집단은 그 실패를 만회하거나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1차적인 시도의 실패 시점을 실질적인 종료시점으로 볼 수 없다. 그 경우 2.3.4차 권좌복귀기도(정적의 제거기도)는 각기 독립적인 내란으로 보기보다는 1차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내란행위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각각의 행위는 독립적인 범죄라기 보다는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

2. 계속범--1차시도로 내란죄가 기수(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때)에 이르지만 실질적인 범죄종료(탄핵 또는 대통령취임일-5.18사건에서 비상계엄해제 시점 1981.1.24.에 준하여)까지는 국헌문란의 위험 상태가 유동이고 지속적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국헌문란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천위쿠데타는 내란집단(한덕수 최상목 포함)이 권력의 중심에서 완전히 축출될 때까지 연속적인 조치들을 통해 국헌문란의 위험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으므로 일반 쿠데타와 달리 계속범으로 보아야 함

\*\* 5.18내란범죄에 대해서도 80.5.17~81.1.24. 8개월간 폭동행위가 간단없이 계속되었다고 함(대법원도 사실상 내란죄를 계속범으로 인정하는 셈)

## 내란죄의 법리 7(내란행위의 종료시점)

--공범의 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범죄의 종료시점(실질적 종료)이 관건이다. 이는 단순히 기수시점과는 다르다. 공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종료 이전에 가담이 있어야 한다.

--언제 내란행위가 종료되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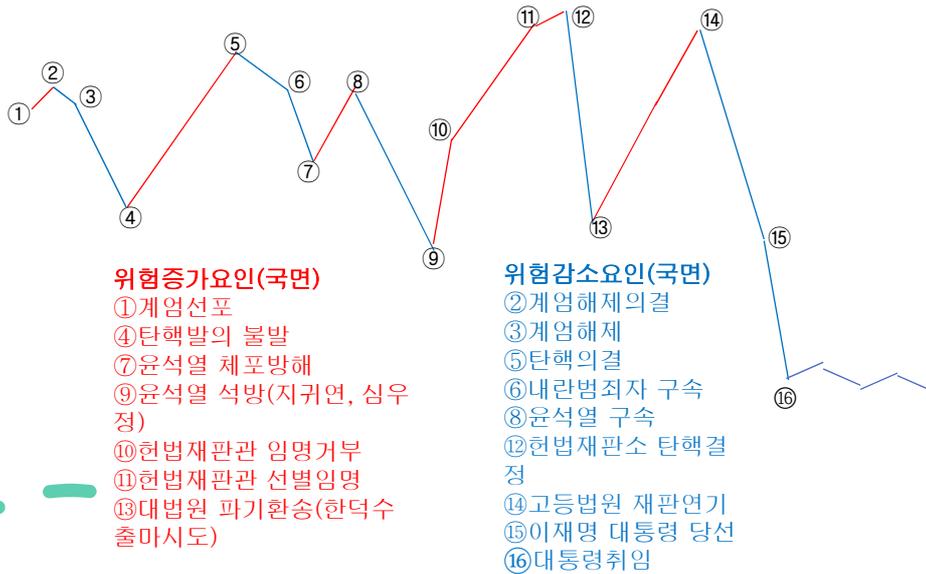
1. 내란행위가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이나 대통령의 계엄해제 조치로 끝났는가?
2. 국회의 탄핵의결의 시점에 끝났는가?
3.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 시점에 내란이 끝났는가?
4. 내란집단의 장기집권의 프로그램으로서 이재명에 대한 범률전쟁이 연기된 시점인가? 이재명의 대통령 당선시점 또는 취임시점을 내란의 종결시점으로 보아야 하는가?

→ 과거 신군부내란사건의 공소시효 기산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실질적 종료 81년 1월 경)을 기준으로 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일(\*윤석열을 권좌에서 법적으로 물러나게 한 날)이라고 볼 수 있다(다음 그림의 ㉓).

→윤석열만의 개인적 내란이 아니라 법조인들과 관료들의 합법적 수단에 의한 참여(연속적 내란시도들)라는 점에서 보자면 범률전쟁이 중단된 날(고등법원의 재판연기경정일)이다.(㉔ 발제자는 이 견해를 지지한다).

이러한 관점에 동조하면서도 대통령 당선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 내란의 파동—1.4.7.9.11.13은 각기 내란가담행위(성립범위)



## 내란죄의 범리 8(가담자)

1.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 관여한 자는 앞의 논의에 따라 처벌된다. 내란계획을 사전에 인지한 자들은 모두 내란집단에 해당한다.
2. 내란집단의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내란죄의 공범(교사범 및 방조범)이 될 수 있다(다수설). -내란집단에 속하지 않더라도 내란계획을 알고도 폭로(신고를 받아야 할 자들이 내란을 일으키고 있으므로)하지 않는 자(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는 방조범에 해당한다.
3. 비상계엄 이후에 공적인 권한을 활용하여 계엄해제, 구속영장집행, 탄핵을 방해하는 자들(국회의원, 대통령실 근무자 등) 및 석방을 주도한 자들(검사, 판사)도 내란범죄의 주요임무종사자에 해당한다.
4. 내란집단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탄핵결정을 반대하는 자도 헌법수호 의무에 비추어볼 때 내란방조범이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내란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유성환 의원은 국시론을 펼친 이유만으로 처벌된 적이 있다.
5. 날조 증거로 이재명의 유죄판결을 주도한 검사들과 부화뇌동하여 유죄판결을 내린 판사들도 내란방조죄 및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물라 재판).

## 내란죄의 법리 9(국무위원)

1. 김영호와 김문수는 운동권이어서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않을 정도로 감이 좋은가?(심각한 시각)
2. 국무위원 전원은 국무회의에서 계엄안을 부결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내란죄 정범이다.
3. 국무회의는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헌법상의 중간절차이다. 즉 **절차적 권한에 의해 국무위원은 위헌적인 계엄(내란) 선포를 저지할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된다.** 다수가 찬성하고 그에 대해 소수가 반대했다면 그 반대자는 계엄선포 자체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
4. 알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명백하게 반대하지도 않고, 즉시 사표도 내지 않고, 안 읽은 척 강변하고, 집에 가서 모르쇠하는 행동은 부작위범으로서 내란죄를 범한 것이다. 지지하지 않은 정도만으로는 국무위원은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즉 국무위원은 민주헌정질서 수호의 보증인이다. 다른 사람은 거론할 필요도 없고, 송미령과 김영호도 내란죄를 범한 것이다. 장관 자리가 알바생인가? 집에서 잠자고 있으면 죄를 면하다니!!
5. 한덕수, 최상목—헌법재판관 임명거부, 선별임무, 대선출마→후속적인 내란

## 내란죄의 법리 10(국민의 힘 지도부)

국민의힘의 지도부중 상당수는 주요임무종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계엄선포전부터 아는 자

계엄선포후 협력자, 체포방해자, 탄핵방해자 들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없다(대통령도 기소되는데)

## 내란죄의 법리 11(국가인권위원회, 민간 빅마우스)

--주변적 국가기관에서 내란주범을 두둔하는 결정을 내려 대중을 그릇된 방향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내란방조나 내란선동에 해당한다. 운석열에 유리한 결정에 동조한 위원들은 내란방조범이다.

--내란 선동죄는 공범(교사범)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자신의 특수한 행위를 통해 내란죄를 강화하고 대중에게 부추기는 것이므로 처벌한다.

--12월 3일 이전에 계엄의 선포를 부추긴 극우 유투버들은 모두 내란선동죄에 해당한다.

--계엄선포 이후 탄핵결정 시점 사이에 내란세력을 호위하기 위하여 광장에서 위헌적인 책동을 부추기는 세력들은 모두 내란선동죄와 내란방조죄에 해당한다.

--특히 서부지법을 타겟으로 폭력을 조장하는 발언을 했던 자들과 서부지법 인근에서 사주하고 두둔한 법조인이나 목사들도 내란방조죄에 해당한다. 아마도 처음부터 참여한 자들인 경우에는 내란집단에 속하는 자일 것이다.

--광장에 나와 극우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범죄로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다.

## 군사반란죄

-군형법상 반란죄의 구분과 처벌도 내란죄에 준하여 해석한다.

-군사반란은 목적범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 경우 보통군인들도 군형법 제5조에 2호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에 해당한다. 그들은 3호의 ‘반란에 부화뇌동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참여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군인들이 ‘법의 무지’를 이유로 금지의 착오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으나 이미 <5.18내란목적살인죄 및 내란죄>에서 보통 군인들도 원칙상 내란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보통군인들에 대해서는 형사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군사반란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은 군인(장교)도 반란불보고에 해당한다.

-동시에 비상계엄선포와 실행과정에서 명백하게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내란행위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떠한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들을 위해 명예를 부여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내란집단은 군사반란도 일으켰으므로 수괴급 인물은 사형이 법정형이다.

## 책임과 정화, 함께 살기

### 혈육과 권력



- 죽은 폴리니케스 앞의 안티고네
- by 니키포로스 리트라스(1895)



- 루푸스, 로물루스, 레무스

## 제타와 카라칼라(co-augustus)

- 제타는 형 카라칼라의 경호원에 의해 살해되고, 카라칼라는 제타의 지지자를 살해하고, 원로원은 제타에 대하여 추모금지/기록말살형(damnatio memoriae)를 선포하였다.
- 제타의 초상은 모든 그림에서 삭제당하고, 동전은 용해되고, 그의 이름은 파피루스 기록에서 지워지고, 제타의 이름을 말하고 쓰는 행위도 사형에 처해졌다. **추모금지 후 제타의 지지자와 이너 서클 2만여명이 살해되었다.**



## 대역죄의 처벌사례

- 흥경래 민란(1819)—정주성에서 붙잡힌 사람(여성, 10세 이하 남자 배제) 1,917명 전원 처형
- 이재수의 난(1901)—장두 세 사람 처형(김윤식, 속음청사)
- 처벌의 범위에 대한 특별한 원칙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황에 따라 몰살형 또는 선별적 처형을 시행함
- 현대에 올수록 형사정책적인 고려들이 작용하여 처벌을 세분화한다.
- 5.18 신군부 내란에서 처벌범위도 참조사항이 될 것이다.



## 야스퍼스 <죄의 문제>

--전쟁범죄에 대한 독일인 전체의 책임을 논하는 데 방점

1. 법적인 죄-- 학살,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범죄, 형법상의 범죄
2. **정치적인 책임(행위책임인가 운명인가? —membership)—집단책임으로 상징**  
결과적으로 만행을 저지하지 못한 죄, 전쟁을 막지 못한 죄, 전쟁과 야만을 결정한 국가의 구성원인 죄, 그러한 정치의 일부가 된 죄
3. 도덕적인 죄(도덕적 비난가능성/다른 행위의 가능성 전제)—학살과 전쟁에 열광, 협력, 묵인, 방관한 죄. 허위의 삶, 자기기만 등→ **태도와 입장의 죄**
4. 형이상학적 죄(다른 행위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죄의식 발현)— **원죄**, 살아남은 자의 죄(survivor guilt)→자기정화/변화(뉘우침)

## 상관의 명령에 따른 책임(I was just following orders)

1. 불법적인 명령을 따른 부하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절대적 책임원리)

Little v. Bareme(1804)-프랑스로 가는 미국배를 나포하라(통상관계정치법 1799)→대통령 존 아담스가 프랑스를 오가는 배를 나포하라고 명령→이에 따라 프랑스에서 오는 덴마크 선박 flying Fish를 나포한 함장에게 배상책임을 지움(민사사건)

The United States v. John Jones(1812)→ 포르투갈 상선을 약탈하고 폭행을 가한 행위(형사사건)

2. 상관의 명령을 따른 부하는 책임지지 않는다(superior respondeat)

Littleton Waller Case(1902)→필리핀 전쟁에서 상관의 명령에 따라 소령 리틀턴 윌러는 필리핀 징문 11명을 최종 목적지에서 반역, 절도, 불복종을 이유로 재판 없이 살해하였다. 윌러는 무죄가 되었고, 상관은 군기위반으로 경미하게 처벌되었다.

3. 지배적인 견해: 명령이 명백하게 불법적인 경우에는 그 명령을 이행한 자도 책임을 진다—국제형사재판소규정-- 인도에 반하는 범죄와 제노사이드는 명백하게 불법적이다(patently illegal).—금지하고(법률의 착오)를 허용하지 않음 -우리나라 법원도 금지의 착오를 인정하지 않음(10.26쿠데타)

## 장교의 책임

**\*\*영미법에서 장교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를 부과하는 경향이 있다.**

Mitchell v. Harmony Case(1851)—멕시코 전쟁에서 미군대령이 민간상인의 재산을 명령에 따라 압수하여 멸실시킨 사건 - 미국은 국가배상법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공직자와 군인의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법리를 발전시켰다.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중요성과 관계없이, 군 장교가 상관의 명령을 제시함으로써 불법행위(unlawful act)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은 유지될 수 없는 것이다. 명령은 감경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정당화사유가 되지 않는다(It can never be maintained that a military officer can justify himself for doing an unlawful act by producing the order of his superior. The order may palliate, but it cannot justify)” .

장교단/경찰간부의 책임을 어떻게 유형화할까?

계급 및 지휘구조를 고려하여 형사책임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보통군인(위관급장교+병)은 논외로 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 아르헨티나 면책법(1987)

1. 정당한 복종법(Ley de obediencia debida)은 라울 알폰신이 군인들의 카라판타디스 봉기 이후 통과시킨 면책법이다. 그 전에 과거청산을 중단하는 전면중단법(Ley de Punto Final 1986)도 도입하였다.
2. 군대, 경찰, 교도소 및 기타 보안 기관의 일반 요원을 포함한 **모든 장교(대령 아래)와 그 부하**가 독재 정권 기간 동안 저질러진 범죄, 즉 강제실종, 불법구금, 고문, 살인 등(미성년자 및 실종자의 재산착복은 예외)에서 대해서 정당한 복종, 즉 **상관의 명령에 대한 복종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면제하였다.
3. 당시에 군사 정부 수반 및 평의회의 주요인물은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다.
4. 신자유주의 보수파 메넴은 1989년 사면을 단행하였다.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2003년 8월 국민의회는 <정당한 복종법>과 <전면정지법>을 폐지하고 **공소시효부적용협약**에 가입하고 강제실종에 관여한 군인 및 공직자들을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 기소하여 중형(중신형에서 수십년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 아르헨티나 로사리오 연방형사법정(2014. 2.24 판결)

피고인 민간정보요원 5인에 대해, “그들은 **법적 명령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었으며**, 이는 부하 직원으로서의 그들의 위치에서 명백한 상황이다. 형평의 요구에 비추어보면, 체계적인 절멸의 틀 안에서 최고 책임자의 명시적인 명령과 같은 특별한 외부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지의 자유로운 결정에 대한 침해**를 무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피고인들이 **전포괄적이고, 비타협적이고, 무자비한 권력 앞에서 그러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신체적 완전성에 대한 위험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하급 간부들에 대해서 명백히 책임을 조각하지는 않지만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위계적 명령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규정 제8조**에 반영되어 있다. 또한 **르다국제군사재판소규정(제6조)**과 **유고국제군사재판소규정(제7조 제4항)**에도 동일한 규칙이 반영되어 있다.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제31조 제1항 형사책임조각사유)**은 정의를 이유로 단순히 형을 감경하는 것을 넘어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5인에 대해 25.25.25.16.16년형 선고)

2017.5.17일 최종판결에서는 민간요원 및 군장교(중령부터 중위까지) 전원에 대해 중신형(훈방구금) 선고

## 헌정파괴범죄에 대한 사면제한법의 제정 필요

틸레센-Heinrich Tillessen(1894-1984) 독일군 해군장교, 1차대전후 해병자유군단 가입. 1921 베르사유조약 체결시 독일재무장관인 **마티아스 에르즈베르거** 저격살해, 탈출, 해외도주, 1932년 귀환, 히틀러권력장악.

1933년 히틀러 사면령(Straffreiheitsverordnung) 선포, 나치당 가입, 1945 체포.

1946년 8월 26일, 바덴주 법무장관 기소, 법원은 1946년 9월 10일 1933년 사면령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사건을 각하. 검찰은 1946년 9월 13일 프라이부르크 오버란트법원에 항소하였고, 1946년 9월 30일, 법원은 9월 10일의 판결을 뒤집고 재판장을 개시해야 한다고 판결 →다시 **오펜부르크 란트법원 재판장 루돌프 괴링(Rudolf Goering, 1883-1964)** 은 1946년 11월 검찰의 사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함.

프랑스 점령당국은 틸레센을 다시 체포하고, 재판장을 해직함. 프랑스군정청 *general du Gouvernement militaire de la zone française d'occupation en Allemagne* (GMZFOA)은 **히틀러의 사면령의 효력을 부정함** (1947.1.6).—**라드브루흐—히틀러의 사면령이 법률적 불법이라고 지적**

오펜부르크 란트법원의 판결은 항소법원에 의해 파기되고, 콘스탄츠 지방법원에 이송됨. 법원은 1947년 통제위원회법률 제10호를 위반한 살인 및 반인도범죄로 15년형을 선고함

1952년 5월 가석방, 12월 집행유예, 53년 3월 마티아스 에르즈베르거 부인의 탄원으로 감형...

뉘른베르크 재판소규정 제8조: "**피고인이 그의 정부나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 행동했다는 사실은 그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지만, 법원이 정의의 요청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에서 감경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

**국제형사재판소규정 ---제31조 형사책임 조각사유(강박 참조)**

1. 이 규정에서 정한 여타의 형사책임 조각사유에 더하여, 행위시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가. 나. 다....

라. 재판소의 관할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주장된 행위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대한 급박한 사망 또는 계속적이거나 급박한 중대한 신체적 위해의 위협으로부터 비롯된 강박에 의하여 야기되었고, 그러한 위협을 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행동한 경우. 다만, 그 자가 피하고자 하는 것보다 더 큰 위해를 초래하려고 의도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한 위협은, (1) 다른 사람에게 의한 것이거나, 또는 (2) 그 사람의 통제범위를 넘어서는 기타 상황에 의하여 형성된 것일 수도 있다.

## 법적 책임과 도덕적 정치적 책임

1. 내란집단(5.18)-- ‘일심동체(one mind and one will)를 형성한 사람들(그로티우스- <전쟁과 평화의 법> ‘처벌의 공유(poenae communicatio)’ 장에서)→내란을 설계한 자, 국무회의구성원, 군지휘부, 단위부대지휘관, 민간인 조연자들)→내란죄 주범
2. 내란죄의 범의를 갖지 않은 가운데 상명하복 관계에서 동원된 군인(지휘관이 아닌 common soldiers)
3. 내란집단에 속하지 않으나 외곽에서 내란범죄를 선동하고 조력한 자(광장목사, 극우집회 주동자, 극우 유튜버)
4. 계엄선포에서 탄핵결정( 또는 고등법원의 재판연기 연기결정) 시점까지 사후적으로 내란범죄자를 유리하게 투쟁집단에게 불리하게 법기술을 사용하거나 법률전쟁(lawfare)을 감행함으로써 국헌문란을 지속시키거나 독자적으로 국헌문란을 초래한 공직자들

-----  
 \*\* 보통군인들/윤석열수호집회에 나온 보통사람들—형사정책의 문제/정화의 문제  
 유마경—유마힐이 우파리(법을 잘지키는 부처님의 10대 제자중 1인)에게 했던 가르침

## 내란죄 관여자의 분류와 조치에 대한 참조사례(나치청산)

모든 독일인을 대상으로 삼았음

근거--통제위원회지시 제38호(1946)-나치즘 및 군국주의로부터 해방 법률 제104호(1946)

나치당의 계급은 30등급/1933년 나치당원수 250만, 1945년해산시 700만/

역할이 사소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많아서 선별할 수밖에 없음-->선별성(selectivity)은 이행기 정의(형사처벌)의 취약점(자의성)이지만 정치적으로 불가피함

정화심판소(Spruchkammer) 설치

---5.18에 동원된 군인으로 민간인 학살에 참여한 보통군인들(common soldiers)은 기소하지 않음

--12.3내란 참여자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지휘관과 보통군인의 구별이 불가피함.

## 정화심판소(Spruchkammer)

### 1. 정화심판소 구성

연합국은 자신의 점령구역에서 각국의 군정법령에 기초하여 정화심판소 설치. 해방부장관이 깨끗한 독일인으로 하여금 심판하도록 함(재판장+4-6인 배석판사—독일인 임면). 독일인들은 참여를 꺼리고 처벌을 완화시키는 경향도 있었으나 **국제군사재판소에서 무죄가 나온 인물에 대하여 정화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었음**(때로는 해방청직원들이 처벌을 요구하며 파업하는 사례도 있음).

### 2. 등급분류

전체 독일인을 나치협력 정도에 따라 다섯 등급( 1. 주범Hauptschuldige .2. 중죄Belastete (열성파, 군국주의자, 모리배) . 3. 경죄Minderbelastete. 4. 부화뇌동자MitlDufer . 5. 무혐의자Entlastete )으로 분류하고, 무혐의자에 대해서는 결백증명서(Persilschein)를 발급하였다. **성인은 점령군당국에 제시한 질의서(131개항)에 응답해야 했다.**

### 열성파(제7조 제1항)

1. 자신의 직위 및 활동을 통해 나치당의 전체정치를 기본적으로 후원한 자
2. 강제, 협박, 폭력, 억압 혹은 여타 부당한 조치를 가하는 데 자신의 직위, 영향력, 배경을 이용한 자
3. 나치적 폭력지배, 특히 인종주의의 신봉자로 증명된 자

**제7조 제2항(다음의 행위가 주범이 아닌 경우 열성파에 해당한다)**

1. 말이나 행동으로, 특히 언설이나 저술을 통해, 자기 또는 타인의 재산을 자발적으로 기부함으로써 또는 정치적 경제적 또는 문화적 생활에서 자신의 개인적 명예나 권력을 동원하여 나치 권력지배를 조성 강화 유지하는 데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기여한 자
2. 나치이론이나 교육을 통하여 청소년의 정신과 영혼을 병들게 한 자
3. 확립된 도덕원칙을 무시하고 나치 폭력지배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정과 혼인생활을 붕괴시킨 자
4. 나치에 봉사하기 위하여 재판을 불법적으로 침해하거나 판사 또는 검사로서 자신의 직책을 정치적으로 남용한 자
5. 나치에 봉사하기 위하여 선동적 또는 폭력적으로 교회, 종교단체, 세계관결사에 반대한 자
6. 나치에 봉사하기 위하여 예술과 학문의 가치를 농락하고 훼손하고 파괴한 자

**\* →제7조 2항의 책색 항목들은 이른바 나치에 물든 학자들, 지식인들에 주로 해당**

**→극우유투버나 선동가들에 대한 참조**

주범(통제위원회 지시 제38호, 제5조)

1. 나치즘의 희생자나 반대자에게 정치적인 이유로 범죄를 저지른 자
2. 독일 내 혹은 독일이 점령한 지역에서 외국인이나 전쟁포로를 국제법에 위반되게 취급한 자
3. 비록 저항운동을 진압할 때 행해진 것이라도, 난동, 약탈, 징용 및 기타 폭력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
4. 나치당, 이 당의 직속 혹은 부속단체들 중의 한 단체, 혹은 여타 다른 나치적 및 군국주의적인 조직에서 지도적인 위치에서 활동한 자
5. 제국정부, 주정부 혹은 이전 점령지역의 통치당국에서, 지도적 나치 혹은 나치적 전제정치 후원자만이 차지할 수 있는 지도적 위치에서 활동한 자
6. **그밖에 나치적 전제정치에 비법한 정치적, 경제적, 선전적 혹은 그밖의 지원을 제공한 자, 혹은 자신 혹은 타인을 위하여 나치적 전제정치와 결탁하여 아주 현저히 이득을 본 자**
7. 게슈타포, 보안방첩대, 나치친위대, 비밀야전경찰, 비밀국경경찰에서 나치적 전제정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자
8. **강제수용소 혹은 강제노동수용소 혹은 감옥, 치료기관에서 살해, 고문 혹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 밖의 잔혹행위에 가담한 자**
9. 사익 또는 이윤추구욕 때문에, **나치적 전제정치의 반대자들을 밀고하거나 혹은 그밖에 그들의 박해에 기여함으로써, 게슈타포, 보안방첩대, 나치친위대 혹은 유사조직과 협력한 자.**

7. 노조의 파괴, 노동자계급에 대한 억압, 조합재산의 일실에 주도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관여한 자
  8. 선동가, 밀정, 밀고자로서 인종, 종교, 나치즘에 대한 정치적 반대 또는 나치지시에 대한 위반을 이유로 타인에게 손해가 되도록 소송절차의 개시를 초래했거나 초래하려고 시도한 자
  9. 나치 폭력지배하에서 자신의 지위나 권력을 범죄, 특히 공갈, 횡령 혹은 사기의 도구로 남용한 자
  10. **국가사회주의 독일안팎으로 독일노동자당의 반대자, 전쟁포로, 이전 점령지역의 주민, 외국의 민간노동자, 수감자 혹은 유사한 자에 대해 증오의 태도를 취한 자**
  11. 국가사회주의적 입장을 이유로 후방근무 혹은 전방근무를 면제받는 혜택을 주거나 혹은 반국가 사회주의적 입장을 이유로 징집 혹은 전선으로 진출을 유발하거나 이를 시도한 자
- 나치체제의 주요 공적 기구, 주요단체, 주요직책에 해당하는 자를 정화조치 대상자로 규정(반증가능한 추정)

## 정화조치

### 1. 조치내용:

노동교화형, 재산몰수, **공증인, 변호사, 공직취임의 영구제한**, 연금수급권박탈, 참정권박탈, 노동조합 또는 경제단체의 회원가입금지, **기타 자유업, 교사, 목회자(이근안), 방송해설가 등 직업제한**, 거주지제한, 모든 면허증, 허가증, 자격증 및 자동차소유권의 상실→**교수들, 언론인의 직업제한/직업금지**

**Cf. 우리 법제와 비교필요---**형벌(징역형, 벌금형, 자격상실형, 자격정지형),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 사회봉사명령(교육수사강-재교육)

2. 정화심판소는 원칙적으로 정치적 정화조치를 함. 주범과 중죄인은 형사처벌을 받기도 함. 형사처벌을 받았던 사람도 정화조치의 대상이 되기도 했음. 주범과 중범에 대해서는 중한 정화조치를, 경죄자와 부화뇌동자에게는 경한 정화조치를 취함.

### 3. 정화심판절차의 특징

무죄추정이 아니라 **오히려 유죄추정이 원칙**이라 함. 따라서 피의자는 자신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했다. 범죄단체로 인정된 조직의 구성원은 빠져나갈 방법이 거의 없었음. 미담조작도 가능함.

## 교수들의 영욕(법대 교수들)

바이마르 시대----친바이마르파/반바이마르파로 양분

직업공무원복구법(1933)- 히틀러집권후 유대인, 사회주의자(사민당원), 민주주의자들 파면(독일대학 법과대학 교수 3분의 1이 1934년까지 파면). 빈 자리를 영나치들이 채움. 이들이 60-70년대까지 독일대학의 분위기를 지배함(한국 법학 1세대의 스승들)

나치시대의 법이데올로그--키일학파, 괴팅엔학파 득세, 모든 대학이 획일화(Gleichschaltung)됨

나치정권장악후 대학교수들의 운명

1. 자진 퇴직자—알프레드 안쉬츠

2. 강제해직당한 자/망명자- 라드브루흐, 진츠하이머, 켈젠, 볼프, 라이프홀츠 등

3. 영합한 자 (나치교수)

1) 속죄조치(강의금지) 후 교수로 복직한 자(라렌츠, 미카엘리스, 담, 샤프슈타인)

2) 속죄조치를 거부하고 해직된 자(카를 슈미트)

3) 신원보증을 통해서 무혐의자로 분류된 자(에른스트 포르스토프)

## 결백증명서(Persilschein)



## 처벌, 정화, 재교육, 시민정치교육

1. 처벌: 내란범죄자, 군사반란자, 침략범죄기획자(군인, 공직자, 민간인)를 상대로 행위, 가담정도에 따라 처벌한다.
2. 정화조치: 나치정화법을 준용하여 정책적으로 벌금형과 명예형을 부과하거나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여 징계처분(중징계 및 경징계)을 부과한다.
3. 재교육: 불법성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보통군인(국회 침탈조/의원체포조 제외) 및 보통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재교육을 시행하고 현직에 복귀.
4. 시민교육: 음모이론을 신봉하고 극우화된 시민을 상대로 강력한 시민정치교육을 시해하는 것이 필요.
5. 극우유튜버 및 극우집회 주동자 활동제한: 중한 경우 징역형, 경미한 경우 명예형. 일부는 내란선동죄로 처벌하고, 내란세력을 지속적으로 지지하는 방송을 내보낸 극우 유튜버들에게는 향후 몇 년간 언론활동을 규제한다. 표현의 자유를 남용한 자에게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자유권규약도 허용한다(제18조 제3항 종교 또는 신념 표명의 자유 제한, 제19조 표현의 자유 제한, 제20조 전쟁선동, 증오고취).
6. 극우집단에 대한 상시적 국가 모니터링: 독일헌법보호청의 역할 참조.
7. 헌정질서 파괴범죄로서 사면제한법규정 도입...

## 계엄의 밤(헌법의 수호자가 누구인가?)

- 계몽령?-국민계몽선전부(괴벨스)

- 요한 하위징아 <호모 루덴스>

나치의 침략을 예상하고, “곧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 대학과 과학 및 학문의 자유를 옹호해야 할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내놓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재산도, 자유도, 심지어 생명까지도.”

- 카를 야스퍼스

“인간의 일이란 결코 절대적 안전을 제공할 수 없다. 자유는 언제나 위험에 처한 자유를 통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 절대적 안전을 원하는 사람은 결국 부자유와 정치적 죽음을 원하는 사람이다.” <독일의 미래, 1960>

# 전쟁유도 행위의 가벌성 및 과제

토론 1. 민변 12. 3. 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 TF 박용홀 변호사

## 1. 평양 무인기 투입을 통한 전쟁유도

### 가. 북한의 발표내용

북한은 2024. 10. 11. 외무성 명의의 발표로 한국 군부가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투입하여 뼈라를 살포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나. 정부의 입장

대한민국 정부는 위 사실을 공식적으로 부인하였다.

### 다. 추가적 사실관계

최근 추락한 무인기가 1대가 아닌 2대라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 2. 외환죄 적용법조 - 형법 제95조 군용물건제공이적 제99조 일반이적죄

### 가. 관련조문

제2장 외환의 죄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94조(모병이적)

①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5조(시설제공이적)

①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6조(시설파괴이적)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7조(물건제공이적)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8조(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9조(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0조(미수범)

전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인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나. 적용법조의 검토

● 기존의 논의는 외환유치죄를 중심으로 논의되었으나, 외환유치죄의 구성요건은 “외국과 통모”하는 것으로 북한에 전투 등의 명분을 제공하는 것은, “통모”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외환유치죄의 구성요건을 만족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외환죄의 성립과 관련해 문제되는 것은 북한을 ‘적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임. 외환죄의 하나인 간첩죄에 대해 판례는 일관되게 북한을 적국에 준하여 볼 수 있다고 판시함(1959. 7. 18. 선고4292형상180 판결 및 1971. 9. 28. 선고 71도1498 판결 등 참조).

● 일반이적죄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익의 공여” 개념이 문제됨. 법원은 이적의 의미에 대한 무한정한 확장을 경계하는 입장임(대법원 1956. 8. 3. 선고 4289형상137 판결 참조). 법원이 일반이적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로는 직무와 무관하게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사례(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968 판결 참조)가 있다.

● 그러나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더라도, 북한의 사실상 영공에 침입하여 비방빠라를 뿌린 것은 북한정권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에 대한 자위권 행사 명목의 선제공격의 명분을 제공하여 일반이적의 성립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임.

● 더불어 최근 밝혀진 사실관계들을 고려하면 일반이적에서 나아가 군용물제공이적죄의 성립 가능성이 있음. 이 사건 행위에 사용된 무인기는 소음과 레이더 반사면적 등 저피탐성이 군이 정한 기준보다 낮고 운영방식 역시 고도 320m의 저공으로 평양 시내 주요 지점은 반복하여 비행하게 하였음. 이는 격추 기타의 요인으로 무인기가 추락, 북한에 노획되도록 유도한 것일 가능성을 암시함. 게다가 북측 구역에 추락한 무인기는 기존 알려진 1대가 아니라, 총 2대라는 사실이 확인됨. 즉 이는 북한에게 개전의 명분을 제공하기 위해 총 2대의 무인기를 북한으로 하여금 노획되도록 한 것이라면 일반이적이 아닌 군용물제공이적에 해당함.

### 3. 군형법의 적용가능성-불법전투개시죄 및 이적

#### 가. 관련조문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 5. 29.>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후략)

제2장 이적(利敵)의 죄 <개정 2009. 11. 2.>

제11조(군대 및 군용시설 제공) ① 군대 요새(要塞), 진영(陣營)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이나 항공기 또는 그 밖의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② 병기, 탄약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14조(일반이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행위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적을 위하여 진로를 인도하거나 지리를 알려준 사람
2. 적에게 항복하게 하기 위하여 지휘관에게 이를 강요한 사람
3. 적을 숨기거나 비호(庇護)한 사람
4. 적을 위하여 통로, 교량, 등대, 표지 또는 그 밖의 교통시설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대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 항공기 또는 차량의 왕래를 방해한 사람
5. 적을 위하여 암호 또는 신호를 사용하거나 명령, 통보 또는 보고의 내용을 고쳐서 전달하거나 전달을 게을리하거나 거짓 명령, 통보나 보고를 한 사람
6. 적을 위하여 부대, 함대(艦隊), 편대(編隊) 또는 대원을 해산시키거나 혼란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연락이나 집합을 방해한 사람
7.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
8. 그 밖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

제15조(미수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6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인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②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17조(동맹국에 대한 행위) 이 장의 규정은 대한민국의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도 적용한다.

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

제18조(불법 전투 개시)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에 대하여 전투를 개시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제19조(불법 전투 계속) 지휘관이 휴전 또는 강화(講和)의 고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투를 계속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제20조(불법 진퇴)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에서 지휘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부대, 함선 또는 항공기를 진퇴(進退)시킨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21조(미수범) 이 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나. 적용법조의 검토

- 군형법상 군용물건제공이적은 형법상 군용물건이적의 구성요건에 가중신분적 구성요건이 추가됨.
- 군형법상 일반이적죄 형법상 이적죄와 달리 구체적 구성요건요소가 나열되어있음. 위 무인기 투입이 8호의 일반이적에 해당함은 형법상 이적과 같음.
- 그런데 “적국”을 전제로 하는 형법상 이적과는 달리, “적”을 요건으로 하는 군형법상 이적은 북한의 국가성에 대한 논쟁을 피해갈 수 있음.
- 다만 민간인인 윤석열과 김용현의 신분이 문제 됨. 대법원은 군형법상 범죄라도 신분자의 행위에 가담한 경우 그 성립을 인정하는 바(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5105판결 등 참조) 드론사 현역 간부와 공모한 이들의 행위는 군형법상 이적에 해당함.
- 불법전투개시와 관련해서 역시 신분 및 북한의 국가성이 문제되며 보호법익이 문제됨. 북한의 국가성 및 군형법상 신분 문제는 다른 쟁점과 동일함. 다만 군은 불법전투개시의 보호법익이 통수권의 보장이라고만 보고 있어 문제됨. 생각건데 불법전투개시죄의 보호법익은 지휘관 독단에 따른 침략전쟁의 예방과, 군 통수권의 보장 모두이며, 군 통수권 역시 대통령이 국민과 헌법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헌법 제60조의 해석상 개전은 국회 동의를 필요하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주도한 행위라도 불법전투개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4. 과제-개선입법의 필요성

●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은 군에 대한 지휘 명령권한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군형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위와 같이 군형법 적용대상자들과 공모한 이 사건 행위의 경우 군형법 적용이 가능하나, 불법전투개시, 불법진퇴 등 지휘권 남용의 죄에 관해서는 지휘명령권을 가진 민간인에 대해서도 군형법이 적용 된다는 점을 입법을 통해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판례는 간첩죄에 대해 북한을 적국에 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법원은 위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이 사건 일반이적, 혹은 군용물건제공이적의 성립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위 판례는 “북한 괴뢰집단은 하나의 불법단체로서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북한이 중공계열에 속함으로써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는 결국 북한과 중공을 위한 간첩행위인 만큼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로 인정된다”고 판시한 대법원 1959.7.18. 선고 4292형상180 판결을 근거로 한 것으로 국제관계의 변화 및 죄형법정주의원칙상 비판의 소지가 큼.

● 따라서 외환죄의 구성요건에 관해 ‘적국’, 외국인의 집단인 ‘준적국’외에도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하게 북한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함.

#### 5. 결론

윤석열 일당은 독재를 획책하기 위한 계엄을 선포하였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한반도 전쟁마저 일으키려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인 동시에, 그 수단으로써 평화에 반하는 죄를 저지른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더불어 이 사건을 계기로 진보진영 역시 공화국 수호에 대해 조금 더 진지하고 현실적인 관심을 가져야 함을 절감하였다. 결국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미흡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모두 이뤄져야 다시는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토론 2. 문병효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